

동주 이용희의 분노와 ‘한국적’ 제왕의 탄생

민족주의 비판의 곡절과 근대비판의 착지점

이경미

1. 들어가며: ‘한국적’이라는 물음

지식에 대한 사회학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학문’을 이해하는 방식에서도 지식의 현실성이나 역사성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동향이 한편으로 ‘근대지식’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가능하게 했고, 그 효과는 개념사나 학술사 등 여러 분야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¹ ‘국제정치학’이라는 학문도 이러한 동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지적 계보에 대한 관심은 국제정치학

이경미(李慶美) 서울대 정치외교학부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동북아역사재단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근대 한일 간의 정치사상을 전공하고 있으며, 특히 제국식민지기 민족담론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편저로 『근대 동아시아 평화사상: 질서·저항·공동체와 평화』(2021), 자료집으로 『근대 한국 국제정치관 자료집 제2권 제국: 식민지기』(2014), 논문으로 「여운형의 평화론과 제국의 ‘법과 도덕’ 논쟁: 공명과 균열에 대한 사상사적 이해」(2021), 「‘문명화’와 ‘동화’ 사이에서 주체되기: 근대 동아시아에서 르봉 수용과 이광수의 민족개조론」(2021), 「3·1운동과 제국일본의 위기: 아베 미쓰이에의 전환론과 식민지조선의 합법적 정치공간」(2020) 등이 있다.

<https://doi.org/10.29154/LB1.2022.27.256>

의 메카라 할 수 있는 미국과의 거리를 측정하기도 하고, 그야말로 근대의 잔재와 같은 서구중심성에 문제의식을 드러내기도 한다.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지식사회학적 접근이 유발하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당 학문이 딛고 선 현실성이나 역사성에서 유래된 특징을 어떻게 특정하느냐의 문제에 있을 것이다. 예컨대 ‘한국적’인 학문이란 무엇인지, 학문이 마냥 추상적 이거나 투명한 존재가 아니라면, 그 구체적인 양태를 ‘무엇’이라 표현해야 할지에 관한 고민이라고 할 수 있다.²

한국의 국제정치학도 그 성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아래 ‘한국적인 것’에 대한 고민을 진전시켜 왔다. 물론 아직 합의된 견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공통된 측면이 있다면 한국에서 국제정치학이라는 학문을 문제 삼을 때, 다시 말해 그 한국적인 수용을 고민할 때 반드시 ‘이용희’라는 존재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그가 학계의 ‘시조’라는 사실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도 이용희는 근대지식의 단순한 수용자가 아닌 ‘비판적인 전유자’로서 어디에도 정확한 뿌리를 찾을 수 없는 독특한 학문 체계를 전개했기 때문일 것이다. 스스로 “약점”이라고 참회하고 있듯이 이용희의 학문에는 “이 분을 따랐다” 할 만한 “스승”이 없었다.³ “한마디로 난독”⁴이었다는 그 말대로 잡다하게 쌓아 놓은 지식의 상아탑 앞에서 대개의 연구자라면 그의 지성에 대한 체계적 파악을 포기하고 만다.

지금까지 국제정치학의 성립에 대한 연구에서 이용희가 언급되는 경우는 물론 많았지만, 그 자체를 다룬 연구가 많아진 것은 비교적 최근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공저로 나온 두 개의 단행본과 이와 별도로 나온 개별논문 몇

1 예를 들어, 酒井哲哉 編, 『岩波講座「帝国」日本の学知1「帝国」編成の系譜』, 岩波書店, 2006; 하영선 외, 『근대한국의 사회과학 개념 형성사』, 창비, 2009; 도면희 외, 『역사학의 세기: 20세기 한국과 일본의 역사학』, 휴머니스트, 2009.

2 이와 같은 고민을 ‘냉전’이라는 현실을 통해 풀어내려고 한 연구로 육창준, 「냉전 초기 한국 국제 정치 지식의 재구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박사논문, 2022.

3 「독서연대기로 돌아보는 짧은 정신의 회억」, 『동주 이용희 전집』 제6권, 연암사가, 2017, 52쪽. 이하 『전집』으로 표기. 또한 필요한 경우 수록된 글 제목도 병기하겠다.

4 『전집』 제6권, 14~15쪽.

개가 있는데,⁵ 모두 2017년을 즈음하여 나온 데서 알 수 있듯이 전집의 간행이 상기 동향과 어우러진 성과들이다.⁶ 특히 단행본에서는 이용희의 학문이 갖는 다면성이 여러 주제들—국제정치이론, 서양정치사상사, 민족주의론, 지역통합론 등—을 통해 규명되고 있는데, 의외로 주제들 간의 유기적 관계에 대해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는 학문 분야별의 접근보다는 이용희의 학문 자체의 전개를 다루는 사상사적 접근이 필요한데, 앞서 언급했듯이 이용희의 지식 자체가 체계적 파악을 두렵게 하는 독서편력을 갖는 데다가 그를 둘러싼 현실을 어디서부터 구성할지도 사실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성사적 접근을 시도한 글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이 현실을 냉전으로 풀이하는 경향이 강하다. 앞서 든 옥창준의 경우가 그러하며,⁷ 남기정의 경우도 이용희의 국제정치론을 냉전론으로 읽어 낸 시도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⁸ 물론 그의 학문 전개에서 냉전이라는 상황이 갖는 의의를 부정할 여지는 없지만, 해방 이전과의 맥락 또한 사상사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유정의 연구가 가장 명시적으로 사상의 연속적 측면을 다룬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용희의 권역론을 지역학과 관련시켜 보는 관점은 그의 탈근대적 사상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논점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로야마 마사미치(蠟山政道) 및 동아협동체론과의 연관성은, 담론의 계통으로는 유사하나 사상의 영향관계로는 지나친 강조가

5 민병원 외,『장소와 의미: 동주 이용희의 학문과 사상』, 연암사가, 2017;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엮음,『한국 국제정치학, 미래 백년의 설계』, 사회평론아카데미, 2018; 옥창준,『이용희의 지식 체계 형성과 한국 국제정치학의 재구성』,『사이間SAI』 제22호, 2017; 기유정,『해방 후 한국의 '지역학'과 제국의 학설: 이용희의 '권역' 개념을 중심으로』,『한국정치연구』 제28집 제2호, 2019; 옥창준,『현실로서의 냉전과 한국 국제정치학의 형성: 조효원과 이용희의 냉전 국제정치론을 중심으로』,『한국학 연구』 제63집, 2021; 기유정,『냉전 초기 한국의 민족국가론과 그 균열들: 이용희의 비동시대성을 중심으로』,『한국정치연구』 제30집 제3호, 2021.

6 『동주 이용희 전집』은 2017년에 총 10권으로 출간되었다. 각 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권 국제 정치원론, 제2권 정치사상과 한국민족주의, 제3권 일반국제정치학(상), 제4권 한국외교사와 한국외교, 제5권 미래의 세계정치, 제6권 독시재 산고, 제7권 한국회화소사, 제8권 우리나라의 옛 그림, 제9권 한국회화사론, 제10권 우리 옛 그림의 아름다움.

7 옥창준,『냉전 초기 한국 국제정치 지식의 재구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박사학위논문, 2022.

8 남기정,『이용희의 국제정치학 체계와 냉전인식: 냉전과 분단 기원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한국 국제정치학, 미래 백년의 설계』, 313~347쪽.

아닐까 생각된다. 옥창준 또한 이용희의 지식형성 과정에서 해방 전 만주에서의 경험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⁹ 만주시절을 정치학의 각성기로 주목하는 점에서는 강동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¹⁰ 다만 이들의 문제는 자료적 한계로 분석이 표면적인 수준에 그쳐, 만주에서의 경험이 사상사적으로 어떻게 해방 이후의 논의와 연계되는지 불투명한 데 있다. 이 부분을 본고에서는 이용희가 만주시절에 만난 카(E. H. Carr)의 논의를 어떻게 냉전형으로 전유했는지 밝힘으로써 보완할 것이다.

이상의 문제의식에서 본론에서는 이용희의 학문이 어디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작되었고(2장), 그것이 특정한 상황과 만나면서 어떤 전개를 보여 줬는지(3장), 그리고 어떠한 결론으로 정착했는지(4장) 추적하고자 한다. 이를테면 사상과 상황이 만나 움직이는 이 과정에서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용희의 사상의 근간에는 항상 ‘근대’와 ‘탈근대’가 함께 추구되는 복합적인 사유방식이 존재했다는 점이다.

먼저 2장에서 살펴듯이 이용희에게 정치학은 강한 ‘근대비판’ 의식과 함께 시작되었다. 식민지조선이라는 근대의 밑바닥에서 삶을 시작한 그에게 근대의 폭력성은 차라리 일상이었으며, 그 정체를 지성으로 파악하겠다고 결심하게 해 준 곳이 바로 만주국이었다. 제국일본이 만들어 낸 ‘다민족 제국’에서 시행된 ‘전시동원체제’는 이용희에게 근대의 모순과 탈근대의 기저를 가시화한 원풍경이 되었다.

하지만 이로써 시작된 정치학은 곧 냉전과 만나면서 전개되었다. 3장부터는 ‘근대’와 ‘탈근대’의 두 측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특히 3장에서는 ‘근대’의 측면을 ‘민족주의 비판’ 언설에 주목하여 밝힐 것이다. 이용희의 민족주의 비판은 냉전 초기에는 ‘단일민족주의’ 비판으로, 1960~1970년대에는 ‘저항민족주의’ 비판으로 나타났는데, 그 위상은 일견 내셔널리즘 자체를 비판하는 듯 보이기도 하며 그런 의미에서 초연적 자세

9 옥창준, 「이용희의 지식 체계 형성과 한국 국제정치학의 재구성」, 103~107쪽.

10 강동국, 「국제정치학자 이용희의 탄생」, 『한국 국제정치학, 미래 백년의 설계』, 50~59쪽.

로 평가받기도 한다. 그러나 이용희의 민족주의 비판은 다소 ‘뒤틀린’ 구성을 지녔을 뿐 매우 내셔널리스틱한, 그런 의미로 ‘근대주의적’ 언설이었다는 것이 본고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논점이다. 이 점은 유럽 근대 정치사상 사에 대한 이용희의 이해를 바탕으로 읽어 내야 제대로 해명이 가능하다. 따라서 3장에서는 우선 근대정치사상의 ‘제 맥락’을 그가 어떻게 이해했는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두 번의 ‘민족주의 비판’이 어떠한 곡절을 겪어 ‘근대주의적’ 언설로 나타났는지 밝힐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이용희의 근대주의는 곧 탈근대를 향한 사유를 동반하여 전개되었다. 따라서 4장에서는 근대주의의 이면에서 작동했던 탈근대 언설의 정체를 밝히고자 한다. 특히 이를 미소 냉전을 토대로 전개된 ‘다민족주의 국가론’과 탈냉전기 유럽의 지역통합을 놓고 전개된 ‘연방론’이 연계되는 맥락에 유의하며 살펴볼 것이다. 필자는 이를 카의 냉전형 전유와 슈미트의 주권론이 연계되는 과정으로 보고 있는데, 이와 같은 지성사적 맥락을 배경으로 이용희의 ‘근대비판’이 정착했던 지점을 밝히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이용희의 정치학이 마지막 차지점에서 슈미트를 소환했던 문제와 함께 그의 학문이 갖는 ‘한국적’ 특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근대의 밑바닥에서 시작된 이용희의 정치학은 ‘근대’와 ‘탈근대’를 양축으로 달리는 수레바퀴와 같았다. 대내외적 주권을 가진 민족국가로 구성된 공간을 ‘국제’라고 한다면, 탈근대는 그러한 근대적 서사가 통하지 않는, 그런 의미에서 ‘제국’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용희의 정치학은 줄곧 ‘국제’의 서사와 ‘제국’의 서사를 오가면서 전개된 학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후자’를 세계사의 ‘앞바퀴’로, 그러니까 한국이 쫓아가야 할 미래로 보았다. 본고에서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이용희의 학문을 ‘제왕의 정치학’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가 탈냉전기에 상상한 ‘제국’의 공간이 과연 근대를 지배한 ‘제국주의’와 어떠한 차이가 있었는지 물어볼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 이용희의 학문이 지난 ‘한국적’ 특성을 찾아낼 단서가 있다는 것이 본고의 주장이다.

2. 이용희의 ‘분노’와 정치의 시작

1947년 6월 이용희는 『신천지』에 「단일민족주의국가와 다민족주의국가」라는 글을 발표했다. 3월의 트루먼 독트린에 이어 마셜플랜이 발표된 이달에 미국과 소련을 ‘다민족주의국가’로 규정짓는 이용희의 관심이 냉전이라는 새로운 국제상황과 그 속에서 장차 민족국가를 세워 나가야 할 조선의 독립문제에 있었음을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 이 문제를 ‘근대사’라는 긴 호흡 속에서 바라보며 거기에 배태된 ‘모순의 극복형태’로서 다민족주의 국가를 제시한 이용희의 서술은, 이 글이 단순히 냉전이라는 상황만으로는 풀 수 없는 지적 내력을 담고 있음을 알려 준다. 이를테면 사상과 상황이 만나는 지점에서 발표된 이 글에 담긴 의미는 실로 복잡하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는 이 글이 이용희의 ‘민족주의 비판’의 첫마디를 보여 주는 동시에, 식민지-해방-냉전-탈냉전을 관통하는 ‘근대비판’의 시발점 또한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단독정부의 수립과 한국전쟁을 겪고 난 50년대 중후반 이용희는 두 개의 저작을 세상에 내놓았다. 『국제정치원론』(1955, 이하 『원론』)과 『정치와 정치사상』(1958, 이하 『정치사상』)이다. 두 책은 별개의 학문분야를 다루고 있지만, 그 내용은 이란성 쌍생아처럼 서로 중첩된다. 먼저 『원론』 서문에 제시된 이용희의 문제의식부터 확인해 두자. 아래에 인용한 구절은 지금까지 이용희 관련연구에서 여러 차례 언급되어 왔는데, 여기서 재차 강조하는 이유는 그를 ‘정치학’으로 이끈 원초적 문제의식이 무엇이었는지 명확하게 보여 주기 때문이다.

본래 내가 품게 된 정치학에의 관심은 우리 겨레가 왜 이렇게도 취약하나 하는 의문을 내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 그런데 나는 왜 우리 겨레가 이다지도 취약하나 하는 문제를 헤아려보는 동안에, 취약한 것은 다만 우리만이 아니라 유럽정치, 경제를 재빨리 모방한 일본을 제외하고는 동양 전체가 그러하게 되었다는 것을 새삼스러이 느끼게 되었다.¹¹

‘우리 겨레의 취약성’에 대한 의문이 ‘근대정치’ 자체에 대한 의문으로 그를 이끌었다. 그리하여 “오늘날 동양사회를 지배하게 된 서구형 정치양식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탐구한 결과가 『원론』이었으며, 이를 통해 그는 “유럽에서 발달한 근대정치 및 그것을 중심으로 한 국제정치”를 알아내고 취약한 처지에 놓인 “우리의 현상을 진실로 이해”하려고 했던 것이다.¹²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이용희가 정치에 눈을 뜨게 된 것은 만주에 있었던 1940~1945년 사이였다. 이 “만주시대 5년간”을 이용희는 “내 사상이나 학문 및 생활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 시기로 기억하는데, “말하자면 사회과학으로의 복귀”라 할 수 있는 전환이 일어났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심경의 변화는 “만주 자체에 대한 일본의 통치형태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일어났는데, 이용희는 만주에서 보게 된 정치를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설명한다.

만주에 있어 보니까—알다시피 한국사람도 많았지만—절대적으로 다수인 피지배자는 중국사람이죠. … 중국인들이 만주국이라는 괴뢰를 통해 일본에 지배받고 있었지. 그러한 지배와 피지배관계를 옆에서 보고 있노라니 그 지배의 방식과 성격이 잘 보이더군요. 그래서 다시 정치의 성격에 대해 흥미를 일으켰습니다.¹³

3·1운동의 민족대표 중 한 명이었던 이갑성의 아들로 태어난 이용희는 어린나이에 “나’라는 사람은 공립의 세계에 어울리지 않는 집안의 자식”이라는 현실을 깨달아야 했고, “매주 찾아오는 형사들의 눈에 뛸까봐” “좌익관계 책”들은 “집에 두지도 못했다”는 거기다 “가정의 경제형편”까지 나빠지자 광주학생운동으로 들뜬 학교(중앙고보)에서 “친구를 사귈 시간”도 없이 지내야만 했다. 이용희는 이러한 “자기 환경에 대한 고독감, 열등감이 깊었다”고

11 『전집』 제1권, 4쪽.

12 『전집』 제1권, 4쪽.

13 『전집』 제6권, 48쪽.

회고하는데, 이때 그를 구해 준 유일한 탈출구가 ‘독서’였다. 이용희는 자신의 “고독을 면하려고” 하는 한편 “그에 대한 반발로” 책을 읽기 시작했다고 한다. 다시 말해 “왜 내 환경이 이런 것인가”라는, 식민지조선에서의 자신의 ‘삶’에 대한 ‘분노’가 그를 ‘지식’의 세계로 이끌었던 것이다.¹⁴

만주로 오기 전까지는 이용희에게 있어 지식은 일종의 현실도피에 불과했다. 이용희 자신도 “연전[延專, 연희전문학교] 때까지”는 삶이 “너무 참혹해서인지 현실도피적인 면”이 있었다고 인정하였지만 “만주에 있을 때 비로소 현실도피가 아닌 그것을 직시해야 한다는 감회가 일어났”던 것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그 계기는 만주국에서 벌어지는 일본의 통치 형태, 더 정확히는 일본인과 중국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보면서부터 일어났다. 식민지인으로서 지배받는 ‘나-우리’의 삶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지만, 만주에서의 생활은 자신을 그러한 현실을 그저 옆에서 보는 “주변적 인간(Marginal man)”으로 만들어 줬다. 그때서야 비로소 ‘정치’를 직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¹⁵

앞서 인용한 『원론』의 서문이 알려 주듯이 이용희가 보게 된 정치는 ‘동양의 모방자 일본’이라기보다는 그 배후에 있는 ‘진짜 근대’ 유럽의 정치였다. ‘나-우리’의 ‘취약한 삶’에 대한 분노는 물론 그 원인 제공자인 일본의 식민지배를 직접적인 계기로 했지만, 그가 삶의 문제를 풀어 내기 위해 채택한 것은 ‘독서-지식’이었다. 지식은 만주에서의 경험, 곧 ‘정치’와의 만남을 통해 그의 문제의식을 ‘근대’ 자체로 이끌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용희의 정치학은 시작부터 근대에 억압된 식민지인의 ‘분노’가 담긴 학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의 비판적 지성은 ‘근대를 추구하는 방향’과 ‘근대를 넘어서는 방향’ 두 가지 벡터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전자는 해방 직후 ‘단일민족주의 비판’으로, 후자는 그 극복 형태로서의 ‘다민족주의론’으로 이어졌는데, 이하

14 『전집』 제6권, 11~15쪽.

15 『전집』 제6권, 47~50쪽.

에서는 이 맥락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3. 이용희의 ‘민족주의 비판’의 곡절

1) 근대 정치사상의 ‘세 맥락’과 단일민족주의

“정치사상의 핵심은 ‘사람에 의한 사람의 지배’이다.”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정치사상』 역시 『원론』과 마찬가지로 ‘근대정치’를 탐구하는 목적으로 써진 책이었다.¹⁶ 그런데 이용희에게 정치사상은 “병력, 경찰력 같은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권력이라는 수단”보다는 사람에게 “지배가 정당하다는 의식을 가져오는 권위”와 관계되는 문제였다. 요컨대 “정치적 권위에 대한 복종과 항거의 관념”이 집단적으로 표출된 것이 곧 정치사상을 의미했으며, “정치사상사란 궁극적으로 이러한 복종과 항거의 관념형태의 역사”를 다루는 학문으로 이해되었다.¹⁷

『정치사상』은 실로 이 두 축—복종과 항거—의 역동적인 전개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그의 초점은 ‘근대’에 있었는데, 그 마지막 소절이 ‘단일민족주의의 세계’로 끝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유럽 근대에 나타난 단일민족주의 사상의 내용을 밝히는 것이 이 책의 주된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단일민족주의 사상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여기서 필자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복종과 항거의 두 축의 전개로 추출되는 근대 정치사상의 ‘세 가지 맥락’이다. 특히 ‘지상주의’로 구분되는 마지막 맥락이 ‘근대비판’이라는 관점에 비춰 볼 때 불러일으키는 ‘어긋남’과, 그것이 냉전초기에 전개된 이용희의 ‘단일민족주의 비판’과 갖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용희는 근대를 프랑스혁명을 분기점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데, 전기에 관해서는 교권과 왕권으로 구성된 중세의 이원적 권력구조로부터

16 『전집』 제2권, 4쪽.

17 『전집』 제2권, 13쪽.

의 이탈이라는 관점에서 근대 ‘주권사상’의 형성과정이 논의된다. 주권사상은 당초 마키아벨리, 보댕, 흉스로 대표되는 ‘군주주권설’로 나타났다가 로크, 루소로 이어지면서 점차 ‘인민주권설’로 발전해 나가는데, 이 방향을 결정지은 것이 프랑스혁명이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주권이 ‘군주’에서 ‘인민’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사상적 전환이 있었던 점이 강조되는데, 곧 ‘자연법사상’에서 일어난 ‘신’에서 ‘인간’으로의 교체이다. 중세 자연법사상에서 법의 근원은 ‘신’에게서 연원하는 것으로 믿어졌다면, 근대에 와서는 이를 ‘인간의 내재적 본성’에서 찾게 되었다. 이러한 사태는 ‘공동체’에 대해서도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는데, 고대로부터 내려온 ‘유기체적 공동체’관념이 사라지고 ‘원자적 개인의 집합체’로서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전기에는 주권사상, 자연법사상, 공동체사상을 통해 근대로의 이행과정에 나타난 핵심적 변화가 기술되는데, 이러한 변화를 지탱한 이념이 ‘자유’와 ‘평등’이었다. 따라서 후기에 관한 기술은 이 두 이념을 기축으로 전개되는데, 구체적으로는 먼저 ‘계몽주의사상’에 대한 설명이 나온 다음에 ‘근대민주주의’를 구성한 ‘자유주의’와 ‘사회평등주의’에 대한 서술로 이어진다. 이용희가 계몽주의를 서두에 가져온 이유는 그것이 자연법사상에서 일어난 사태와 상통하기 때문인데, ‘인간에게 내재된 이성’의 빛으로 어둠과 같은 무지를 밝혀 진보를 이룩하는 것이 그 핵심이었다면, 이때의 인간관은 근대 자연법적 보편성을 공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용희 자신은 이와 같은 보편타당한 사상의 형식이 일종의 꾀션에 불과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어지는 ‘자유’와 ‘평등’의 맥락 역시 그 보편성을 강조하기보다는 계급적 이해에 기초한 복종과 항거의 과정으로서 기술되었다. 예컨대 프랑스혁명을 이끈 제3계급에게는 사유재산과 경제활동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정치변혁이 추구되어 왕권을 제한하는 입헌체제가 성립했다. 그러나 “왕권의 압박이 제거되고 제3계급의 정치적 지위가 높아지자 형제와 같은 자유와 평등의 두 이념은 각각 다른 역사적 구실을 맡게” 되는데, 자유가 “유산층”을 위한 이념이 되었다면, 평등은 경제적 의미까지 함축하여 “무산층의 이념”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이다.¹⁸ 이

처럼 복종과 항거의 두 축은 ‘왕권 대 시민’에서 ‘부유층 대 무산층’으로 바뀌며, 양자를 대표하는 이념으로 ‘자유’와 ‘평등’의 맥락이 기술된 것이다.

그런데 근대 정치사상에 관한 이러한 기술은 물론 독창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용희가 이를 근대에 형성된 ‘단일민족주의’ 사상의 핵심내용으로 보고 있었던 점인데,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이어서 나오는 세 번째 맥락을 볼 때 ‘지상주의’로 구분된 ‘반혁명사상’의 맥락이 갖는 ‘근대사상’으로서의 위상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반혁명사상’이란 프랑스혁명에 대한 반동으로 나타난 맥락을 의미한다. 그는 이를 영국의 베크를 실마리로 유럽에 확산된 낭만주의가 헤겔의 국가철학으로 귀결되는 과정으로서 추적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를 앞서본 두 맥락—자유와 평등—이 갖는 ‘근대적’ 특징이 모두 반전되는 맥락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전통과 관습이야말로 소중하고 역사와 권위야말로 중요하지 어떻게 ‘사회계약’이니 ‘인권’이니 ‘인민’이니 따위의 종잡을 수 없는 인위적인 허구 또는 추상적인 개념이 행세하여야만 된단 말이냐 … 베크나 드 메스트르나 인권사상이 내세운 추상적인 원칙 곧 자유와 평등의 개념에 철저한 분석과 비판을 가하게 되어 그러한 자유와 평등의 관념은 한 개의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다. … 사회와 국가는 단순히 개인들이 모여서 만들어 놓은 존재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의 고유한 존재와 생명을 지닌 제도로 보았다. 애당초 사회를 원자적인 개인들이 코코아 회사를 꾸미듯이 계약으로 창설한다고 하는 생각이 망발이 아닐 수 없다. 자연권의 소유자라는 자연상태의 순수한 개인이란 머릿속에서 그려낸 개념적 존재일 뿐이지 관찰로는 있을 수 없는 것이었다.¹⁹

베크에게 프랑스혁명은 유럽에 인권이나 인민 같은 추상개념을 퍼뜨린

18 『전집』 제2권, 133~134쪽.

19 『전집』 제2권, 161~166쪽.

주범에 다름이 아니었다. 곧 ‘자유’와 ‘평등’이란 허구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취한 것인데, 이러한 입장은 자연법사상이나 계몽주의에 대해서도 “반개인주의·반이성주의”를 내세우게 된다.²⁰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대해서도 반전된 인식을 드러내는데, 사회는 ‘원자적 개인의 집합체’가 아니라 그 자체로 실존하는 ‘유기체’로서 그 의미가 회복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유럽 정치사상의 근대적 특징을 모두 반전시킨 반혁명사상은 헤르더, 피히테, 셀링 등의 낭만주의를 거쳐 공동체의 역사성을 강조하는 “민족지상주의”를 낳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독일철학의 관념론과 맞붙어 마침내는 국가지상주의”로 발전하는데, 이것이 바로 헤겔의 국가철학이었다는 것이다.²¹

이러한 서술 끝에 ‘단일민족주의의 세계’라는 소절이 등장하여 『정치사상』은 마무리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용희는 이 마지막 맥락까지를 ‘단일민족주의’의 구성요소로, 그러니까 ‘근대’의 정치사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위에서 살펴본 유럽 정치사상에 대한 이용희의 이해를 바탕으로 볼 때 ‘근대민주주의’를 구성한 ‘자유’와 ‘평등’의 두 맥락은 ‘근대’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나, 마지막 맥락은 차라리 ‘근대비판’에 해당된다. 이용희는 이를 ‘지상주의’라는 일종의 ‘변질’²² 형태로 이해하는데, 이는 앞의 두 맥락과 구별은 하지만 어디까지나 ‘근대의 일부’로 간주하는 인식을 의미한다.

냉전초기 이용희의 ‘단일민족주의 비판’은 이러한 인식 위에 전개되었다는 점을 무엇보다도 이해해야 한다.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그가 비판했던 대상이 과연 ‘근대’였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서 전개된 ‘다민족주의 국가론’이 갖는 ‘탈근대성’에 대해서도 재고될 가능성을 열어 주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다시 논의를 원점으로 돌려 그의 ‘단일민족주의 비판’을 고찰해 보도록 하자.

20 『전집』 제2권, 167쪽.

21 『전집』 제2권, 170~171쪽.

22 물론 변질의 의미는 지상주의에 국한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는 『원론』 제3장 제4절 ‘근대국가의 변질과정’을 참조. 하지만 동시에 지상주의의 대표격인 독일과 이탈리아를 끽곳에서 “근대국가 유형의 변질”(『전집』 제1권, 29~30쪽)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2) 단일민족주의 비판과 ‘지상주의’와의 간격

1947년의 「단일민족주의국가와 다민족주의국가」에는 이미 『정치사상』(1958)의 골격이 나타나 있었다. 그렇다면 거기서 ‘단일민족주의’는 어떻게 논의되었을까. 이 글에서 이용희는 나폴레옹전쟁까지를 단일민족주의의 확립과정으로 보면서, 그 전개를 ‘민족사상과 국민사상의 일치’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 이때 민족사상이란 “근대국가의 초기형태인 절대군주국가의 근대성”을 나타내는데, 그 핵심은 “타민족에 대한 자타의 분별”에 있었다.²³ 이 ‘자타의 분별’이라는 기준은 『정치사상』에서 ‘민족’ 개념을 설명할 때도 이용되었을 뿐만 아니라,²⁴ 『원론』(1955)이나 『일반국제정치학(상)』(1962, 이하 『일반』)에서도 등장하는데, 그 이론적 토대는 칼 슈미트의 정치개념—우적관계—에 있다는 점이 명시되었다.²⁵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용희가 이러한 민족사상을 ‘근대 전기 전제군주’의 등장과 함께 성립한 ‘대외적 주권’ 관념과 관련짓고 있는 점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국민사상은 “주로 대내적 국내적 의미에서 파악”되는 주권 관념과 관련된 것으로 자리매김되었다.²⁶ 문제는 민족사상과 국민사상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 있었는데, 근대 전기에 나타난 민족은 대외적으로는 단일했지만 대내적으로는 일정하지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해 나간 것이 근대 후기의 전개였는데, 양자의 불일치를 메워 간 ‘민주주의’와 함께 확립된 ‘단일민족주의’란 그런 의미에서 ‘대외적/대내적 주권’을 겸비한 ‘민족/국민’ 국가를 의미했다.²⁷

23 「단일민족주의국가와 다민족주의국가」, 『전집』 제2권, 209쪽.

24 『전집』 제2권, 98~100쪽.

25 「국제정치원론」, 『전집』 제1권, 18, 52, 263~264쪽. 「일반국제정치학(상)」, 『전집』 제3권, 84, 116쪽. 슈미트의 정치개념에 대해서는 Carl Schmitt, 田中浩·原田武雄 訳, 『政治的なものの概念』, 未来社, 1970. 이 책은 *Der Begriff des Politischen* (Berlin: Duncker & Humblot, 1932)의 번역본이다.

26 『전집』 제2권, 192쪽. 이 점 또한 『정치사상』에서도 반복된 설명이다(『전집』 제2권, 102~104쪽).

27 단일민족주의국가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원론』에서도 명시되어 있다. “국제정치에 있어서는 베타적 국민국가(또는 민족국가)의 완성이요, 일방 국내정치에 있어서는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일컬을 수 있다. 안으로는 정치권리가 국민 전체에 미쳐야 된다는 것이 통념이 되고 또 실현화의 상태였건 만 국제정치에 있어서는 피아를 구별하는 민족의식, 국민주의의 절정이 실현되고 … ‘단일민족주의’

이러한 확립과정을 마친 단일민족주의는 나폴레옹전쟁 이후 3단계의 역사과정을 밟는다. ‘지상주의’는 그 마지막 단계에 나타난 현상인데, 구체적으로는 베르사유조약에서 2차대전이 끝나는 시기에 나타난 “나치즘, 파시즘, 대화 민족주의”를 가리켰다. 그 특징은 “한 개의 민족이 선천적으로 별써 타민족보다 우월하고 그 탁월한 점은 이미 그 피 그 종족에 있다”고 믿는 혈통적 종족주의와, 자민족에게는 “하늘이 부여하는 신성한 사명”이 있다고 믿는 선민의식에 있다고 설명되었다.

이러한 특징을 갖는 지상주의는 대외적으로는 타민족과의 동격성을 부정함으로써 상호 대립적 관계를 전제로 하는 민족사상 자체를 부인하게 된다. 이용희는 이를 두고 “민족지상주의”는 역설적이게도 “민족을 부인하는 모순”을 범하게 된다고 지적하는데, 이보다도 더 중요한 모순은 다음으로 지적하는 대내적 측면에 있었다. “민족 전체의 의지를 대표하는” 존재로서 “국가”를 절대화시키는 지상주의의 입장은 곧 “국민사상과의 절연”으로 귀결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요컨대 그는 여기서 근대민주주의—자유와 평등의 두 맥락—의 종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그 결과는 독재”에 다름이 아니었다.²⁸

「단일민족주의국가와 다민족주의국가」에서 말하는 ‘지상주의’가 앞서 본 『정치사상』의 세 번째 맥락, 즉 ‘반혁명사상-낭만주의-헤겔철학’으로 이어지는 그 맥락과 연동되고 있음을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용희는 이 맥락이 갖는 ‘근대비판적’ 성격 또한 인지하고 있었다고 봐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상주의를 ‘변질된 근대’로 포함시켰다. 그 대표격에 독일과 이태리뿐만 아니라 ‘제국일본’까지 포함시키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이용희는 여기서 ‘대동아공영권’ 이데올로기가 내세운 ‘근대초극적’ 함의까지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²⁹

가 확립한다”(『전집』 제1권, 57쪽).

28 『전집』 제2권, 197~203쪽.

29 이에 대해서는 이미 논저가 많지만 헤겔철학과 관련해서 근대초극론을 논의한 연구로는 김항, 「결단으로서의 내셔널리즘과 방법으로서의 아시아: 근대 일본의 자연주의적 국가관 비판과 아시아」, 『제

이상의 고찰에서 도출될 수 있는 합의는, 1) 이용희의 ‘단일민족주의 비판’은 근대를 비판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근대비판을 근대인 양’ 비판했던 점에 그 특징이 있었다고 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뒤틀린’ 구성을 통해, 오히려 『정치사상』에서 봤던 2) ‘근대민주주의’—자유와 평등의 사상맥락—을 옹호하는 동시에, 3) 그와 대척점에 배치된 ‘독재’—지상주의의 사상맥락—에 대한 비판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와 ‘독재’를 대치시키는 구도는 단순히 2차대전에서의 ‘승자=연합국’과 ‘패자=추축국’의 구도를 따르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과거에 대한 척도로만 볼 수 없는 것이, 이용희는 같은 시기에 발표된 다른 글에서 동일한 구도를 가지고 ‘현실비판’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56년 4월 『사상계』에 게재된 「피지배자의 지배: 빌어온 민주주의의 고민」에서 이용희는 주권의 ‘대내적 측면’을 문제 삼아 논의를 전개한다.

흔히 주권자로서의 “국민은 단일불가분의 통합체로 해석”되지만, 역사적으로 “지배자로서의 ‘국민’ 개념과 피지배자로서의 ‘국민’ 개념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왔다.³⁰ 이용희는 양자 간의 괴리를 국민 개념의 “이중구조”라고 부르는데, “근대민주주의”는 이 구조에서 출발하여 양자의 괴리를 메워왔다. 여기서도 ‘민족사상과 국민사상의 일치’라는 앞서의 관점이 반복되고 있는 것인데, 그러한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민주주의 정치의 핵심은 인민이 스스로 자기를 다스리는 것” 즉 “치자와 피치자가 서로 같은 원칙”에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³¹

이를 두고 이용희는 “민주정치는 자기표현적” 지배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논의의 역점은 현실비판으로 옮겨 가는데, 자기표현적 민주정치에서는 “피치자가 절망하면 민주정치는 끝나는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스스로 자유와 정치 권리를 옆에 버리고 독재에 귀의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경향은 “민주정치의 형식만을 빌려온 나라”에서 유독 두드

국일본의 사상, 창비, 2015.

30 『전집』 제6권, 174쪽.

31 『전집』 제6권, 164쪽.

리진다는 것이다. 이용희는 이것이 2차대전 후에 독립한 신생국에서 만연하고 있는 “자기표현적 민주주의의 고민”이라고 주장한다. 그 예로 주로 “중남미의 여러 나라들”을 거론하는데, 이들의 “민주헌법”은 “미국 기타”에서처럼 “이미 생활화된 양식”을 법문화한 것이 아니라 “독립되었다는 선언 같은 것이요, 또 미국 영향 하에 있다는 광고문 같은 것이요, 그리고 장차 노력하겠노라고 한 서약문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³²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고민이 비단 그들만이 아니라 ‘내’, ‘남’이 모두 공통”된 문제라는 점에 있었다. 이용희는 이러한 현실인식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를 상기시키고 있었던 것인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결핏하면 실패한 민주주의의 예로 중남미 국가들”을 거론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 의원과 논평가”들에게 “같은 징조가 있으면 같은 병이 아니 일어난다고 뉘라 하랴”고 울화를 터뜨렸던 것이다. “빌어온 민주주의라는 거울”에 비춰진 “지배자로서 행세하는 우리”는 여전히 “자유평등의 실내용에 어둡고 정치권리에 무관심한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³³

이러한 인식에서 볼 때 이용희가 ‘단일민족주의 비판’을 통해, 다시 말해 그 ‘뒤틀린’ 구성을 통해 비판했던 대상—지상주의, 독재—이란 바로 냉전초기 남한의 정치현실과도 연계되는 문제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용희의 단일민족주의 비판을 동시대 논의 속에서 검토한 기유정의 논문이 잘 보여 주듯이 해방 후 남한의 민족담론에서는 ‘혈통주의’를 강조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는 이승만 정권을 지지한 안호상의 주장에도 나타났는데, “한 겨레인 일민은 반드시 한 핏줄”³⁴이라는 독일에서 돌아온 철학박사의 ‘일민주의’ 담론이 ‘지상주의’로 귀결될 가능성은, 이미 ‘제국 일본’을 겪어 본 이용희의 눈에는 충분해 보였을 것이다.

32 『전집』 제6권, 188~190쪽.

33 『전집』 제6권, 192~194쪽.

34 기유정, 「냉전 초기 한국의 민족국가론과 그 균열들: 이용희의 비동시대성을 중심으로」, 119쪽에서 재인용.

3) 저항민족주의 비판과 ‘민주주의’와의 관계

이용희의 단일민족주의 비판이 가진 ‘뒤틀린 근대주의’ 특성은 1960~1970년대 ‘저항민족주의 비판’에도 계승되었다. 한일기본조약이 맺어진 1965년 이용희는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후 퇴임할 때까지 4년 동안에 두 차례 큰 행사를 치렀는데, 1966년 10월의 「한국의 민족주의」와 1968년 4월의 「한국근대화의 갈등과 조화」이다.³⁵ 행사 주제에 잘 나타나듯 이 시기의 저항민족주의 비판은 ‘근대화’ 담론의 확산과 함께 진행된 한일 회담으로 ‘민족주의’가 고조된 상황 속에서 전개되었는데, 그것은 앞 시기의 ‘단일민족주의 비판’과 연관된 언설이기도 했다.

이 시기 이용희의 언설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민족주의를 ‘근대 후기’의 현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대외/내내’의 논리구도를 재편하고 있는 점이다. 1966년의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한국민족주의의 제문제」에서 이용희는 “민족주의란 서유럽사에 있어서 근대 후기 곧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또렷이 나타난 이른바 근대국가 유형에 대응하는 정치 명분”이라는 해석을 제시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뒷부분 근대국가의 정치이념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민족주의를 프랑스혁명 이후의 ‘근대 후기’ 현상으로 한정하는 관점이다. 이어지는 문장에서 바로 알 수 있듯이 이는 민족주의를 “절대군주형이라는 전기 근대국가의 이념”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관점을 의미했기 때문이다.³⁶

앞 절에서 보았듯이 ‘근대 전기’의 특징은 ‘전제군주사상’의 등장으로 설명되었으며, 이는 ‘군주주권설’이라는 형태로 ‘대외적 주권’ 관념이 성립된 상황을 의미했다. 그렇다면 민족주의를 근대 후기로 한정하는 관점은 일차적으로는 민족주의에서 ‘대외적 측면’을 배제시키는 듯 보이는데, 이용희의 언설이 흥미로운 것은 이를 전제로 근대 후기의 민족주의를 다시 두 가지 도식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이다.

이 점은 1973년 3월 『신동아』에 발표된 「현대민족주의」에서 더 정교한

35 이때 발표된 논고는 기타 민족주의 관련 글들과 함께 『한국민족주의』(1977)에 수록되었다.

36 『전집』 제2권, 246쪽.

형태로 논의된다. 이 글에서 이용희는 민족주의를 역사적 전개에 따라 세 가지 유형—시민민족주의, 저항민족주의, 현대민족주의—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 유형이 곧 유럽의 경험에서 추출된 이념이다. 그 맹아를 “교권주의에 대항하는 왕권의 주장”에서 찾는 견해도 있지만, 이용희는 이를 단지 “싹 일 뿐”이라고 거부한다. 여기서도 근대 전기 전제군주사상을 민족주의 이념에서 분리시키고 있는데, 시민민족주의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대외면이 아닌 대내면”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³⁷ 이 ‘대내적 주권’의 성립을 의미하는 ‘시민민족주의’의 유형은 “시민적 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라고도 불렸는데, 호칭은 바뀌었어도 프랑스를 사례로 설명되는 그 개념이 앞서 본 ‘국민사상’과도 연동되는 것이었음을 두말할 나위도 없다.³⁸

이것이 근대 후기 민족주의의 ‘제1의 도식’이었다면, ‘제2의 도식’은 “나폴레옹전쟁을 계기로 해서 독일지역 등에 퍼진 민족주의”에서 추출되었다. 즉 단일민족주의의 확립 시점부터 제2의 도식으로 접어드는데, 이는 “곧 외적의 침략에 대한 자기방어로서의 민족주의”로, “나’와 ‘남’의 대립”에서 오는 민족의식이 고양된 상태를 의미했다. “이러한 대외면의 긴장은 대내면의 구조적 문제”를 억눌러 “민족의 전체성”이나 “신성·영예”를 신격화하는 한편, 국가를 민족의 이상을 구현하는 “지상의 존재로 인격화”한다.³⁹

여기서 이용희는 다시 ‘반혁명사상-낭만주의-헤겔철학’으로 이어지는 ‘지상주의’의 맥락을 거론하고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 맥락이 ‘주권의 대외적 측면이 강화된 민족주의’로 의미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절에서 보았듯이 ‘자타의 준별’은 원래 ‘근대 전기 전제군주사상’의 끝이었으며 ‘지상주의’는 ‘대외적 주권’의 강화를 의미하는 현상이 아니었다. 필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대내/대외’ 논리에 구조적 재편이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그로 인한 효과는 다음 두 가지로 지적할 수 있다.

우선, 1) 이를 통해 세 번째 사상맥락이 지닌 ‘근대비판적’ 함의는 흔적

37 『전집』 제2권, 340쪽.

38 원래 ‘국민’과 ‘시민’은 『정치사상』에서도 근접개념으로 논의되었다. 『전집』 제2권, 102~104쪽.

39 『전집』 제2권, 341쪽.

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상되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2) 이용희가 이 맥락을 ‘저항민족주의’를 비판하는 전단계로 배치하고 있는 점이다. ‘대외적 주권의 강화’라는 의미가 부여된 ‘지상주의’는 그 속성을 ‘저항민족주의’로 그대로 계승시키면서 비판의 근거로 겨냥된다. 여기서 냉전 초기의 단일민족주의 비판과 1960~1970년대 저항민족주의 비판이 결부되는데, 이 점을 이용희의 언설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이용희는 1966년의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민족주의’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우리들의 근대민족주의는 저항의 민족주의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로 외세에 대해서 저항한다는 민족주의에서만 발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⁴⁰

한국의 민족주의를 ‘외세에 대한 저항’의 민족주의로 규정한 대목이다. 이어서 전개되는 비판에 앞서 알아 둬야 할 점은 이용희가 이 문제를 “민족주의의 일반 유형이 한국적인 특수에 있어서 어떻게 구상화하느냐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⁴¹ 여기서 일반유형이란 유럽의 경험(특수)에서 나타나 세계로 전파(보편화)된 민족주의를 의미한다. 달리 말하면 “서유럽의 민족주의에는 두 개의 도식”이 있었는데, 그것이 “세계팽창에 따라 다른 지역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된 바로 그 상황을 의미했다.⁴²

근대유럽의 전파과정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문명의 야만성’이다. 유럽 정치의 틀 ‘안에서는’ 기독교문화권이라는 공동체의식이 통용되었기 때문에 국제정치 양상도 “동류 사이의 적대”를 벗어나지 않았지만, 그 ‘바깥에서는’ 이민족의 “정치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식민지화”가 단행되었다.⁴³ 유럽의 민족주의는 이 과정—비유럽지역에 대한 야만스러운 문명 전파—에

40 『전집』 제2권, 238쪽.

41 『전집』 제2권, 249쪽.

42 「현대민족주의」, 『전집』 제2권, 342쪽.

43 『전집』 제2권, 344쪽.

동원되어, 그 영향하에 세계는 “우월의 민족주의”와 “저항의 민족주의”로 양분되었다.⁴⁴ 공동체의식이 결여된 말 그대로 “무정부(anarchy)의 세계질서” 아래 민족주의의 일반유형—두 가지 도식—을 받아들인 비유럽지역은 “극렬한 저항주의”(제2의 도식)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시민적 민족주의의 경쟁적 공존이 아니라 ‘적’과 ‘나’와의 극한적 대립으로 이해된다. 이런 각도에서는 진정 ‘인류사회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는 역사관이 정당할 수밖에 없다(단재 신채호).⁴⁵

위에서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이라는 신채호의 명제는 ‘나와 남의 대립’이라는 슈미트의 정치개념과 겹치면서 ‘시민적 민족주의’(제1의 도식)와 대치되고 있다. 다시 말해 저항민족주의를 ‘대내적 주권’ 관념—민주주의—이 결여된 ‘대외적 민족주의’로 규정하고 있는 대목이다. 바로 이 맥락에서 “저항적 민족주의는 서유럽 민족주의의 제2의 도식”과 연계된다는 말이 나오는데,⁴⁶ 이로써 ‘대외적 주권’의 강화라는 의미가 부여된 저항민족주의는 근대비판적 합의가 사라진 ‘지상주의’와 결부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단일민족주의 비판과 저항민족주의 비판은 지상주의에 부여된 의미 맥락의 변화를 통해 연계된다. 비록 대외적 측면에서는 논의 재편이 있었지만, 양자의 공통점은 ‘대내적 주권’ 관념, ‘근대 민주주의’를 구성한 ‘자유’와 ‘평등’의 정치이념을 옹호한 데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용희에게 ‘민족주의’는 늘 이 점을 잣대로 비판되었기 때문이다. 앞서 단일민족주의 비판에서 보았던 것처럼 저항민족주의 비판에서도 그 기준은 “민족주의의 국내적 발달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화”를 저해한다는 데 있었다.⁴⁷ 이것이 저항민족주의 비판이 ‘민주주의’와 갖는 관계였다고 한다면, 이는

44 「한국민족주의의 제문제」, 『전집』 제2권, 250쪽.

45 「현대민족주의」, 『전집』 제2권, 346~348쪽.

46 『전집』 제2권, 351쪽.

47 「한국민족주의의 제문제」, 『전집』 제2권, 256~257쪽.

당시대 ‘근대화’ 담론과도 무관한 논의는 아니었다.

이용희의 근대화 관련 논설은 1965년 8월 『신동아』에 게재된 「정치명분으로서의 근대화」에서 확인되는데, 그 내용은 특이한 주장이 담긴 것은 아니었다. 미국의 대아시아 반공정책을 대변한 라이샤워·로스토우의 근대화론과 박정희 정권의 조국 근대화론을 배경으로 한국사회에 확산된 근대화 담론은 ‘경제’ 중심의 지배담론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에 당시 지식 계에서는 경제발전의 중요성을 받아들이면서도 비판적 대응을 모색하는 경향이 공존했다.⁴⁸ 이용희 역시 하코네회의⁴⁹의 한국판이라 할 수 있는 아연 회의⁵⁰에 동참한 한 지식인이었는데,⁵¹ 그 두 달 후에 쓰여진 위의 논설은 근대화의 의미가 ‘민주화’에서 ‘공업화’로 이행되는 분위기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었다.⁵²

1968년에 주최한 「한국근대화의 갈등과 조화」에서는 그러한 시각을 더 강하게 드러내는데, “물질적으로 잘산다”는식의 “경제주의”는 “일종의 흉내 내기, 거짓의 근대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용희에게

48 한국사회에 확산된 근대화론의 성격과 지식계의 반응에 대해서는, 박태균, 「로스토우 제3세계 근대화론과 한국」, 『역사비평』 66호, 2004; 이상록, 「1960~70년대 비판적 지식인들의 근대화 인식」, 『역사문제연구』 18권, 2007; 황병주, 「1960년대 박정희 체제의 ‘탈후진 근대화’ 담론」, 『한국민족운동사 연구』 56집, 2008; 안종철, 「주일대사 에드워 라이샤워의 ‘근대화론’과 한국사」, 『역사문제연구』 29권, 2013; 장세진, 「라이샤워(Edwin O. Reischauer), 동아시아, ‘권력지식’의 테크놀로지: 전후 미국의 지역연구와 한국학의 배치」, 『상허학보』 36집, 2012; 신주백, 「1960년대 ‘근대화론’의 학계유입과 한국사 연구」, 『사학연구』 125호, 2017; 안종철, 「1960년대 한국에서의 “근대화론” 수용과 한국사: 고려대와 동국대 학술회의 중심으로」, 『인문논총』 74권 2호, 2017; 도면희, 「1960년대 한국의 근대화론 수용과 인문학계의 변화」, 『역사와현실』 120호, 2021.

49 하코네회의는 미국 아시아학회의 내부 조직이었던 근대일본연구회가 주축이 되어 1960년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 일본의 가나가와현(神奈川県) 하코네(箱根)에서 열린 국제회의를 말한다. ‘일본의 근대화’에 관하여 미국과 일본의 지식인들이 논의한 이 회의는 동아시아에 근대화 담론이 확산되는 계기를 제공했다. 하코네회의의 내용에 대해서는 의사록이 공개되어 있다. 신주백, 「하코네회의 의사록(1960. 8. 30.~9.1.): 동아시아에 ‘근대화론’을 전파한 기점으로서 하코네회의」, 『한국 근현대사연구』, 80집, 2017.

50 한편 아연회의는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의 주관으로 1965년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6일간 서울의 워커힐에서 열린 대규모 국제회의를 말한다. 참석국은 미국, 일본, 중국 등 총 9개국에 달했고 ‘아시아의 근대화’를 의제로 근대화 문제가 논의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상기 논문 외에, 김인수, 「한국의 초기 사회학과 ‘아연회의’(1965): 사회조사 지식의 의미를 중심으로」, 『사이間SAI』 22집, 2017.

51 안종철, 「1960년대 한국에서의 “근대화론” 수용과 한국사: 고려대와 동국대 학술회의 중심으로」, 57쪽.

52 『전집』 제2권, 223~232쪽.

근대화의 핵심은 한국이 “민족국가”(Nation-State)로서 완결되는 길을 의미 했기 때문인데, “‘잘산다’는 근대화적 의미에는 이러한 ‘방식’이 내재되어” 있어야 했다. 이때 이용희가 말하는 민족국가로서 완결되는 ‘방식’이란 결코 ‘민주화’와 상충되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에게는 민족주의의 대내적 측면—민주주의—의 성숙이야말로 ‘근대’의 핵심이었기 때문이다.⁵³ 따라서 ‘근대화’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외세에 대한 저항’의 민족주의는 ‘대내적 민주화’를 유보시켜 ‘민족국가로서의 완결’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이해되었던 것이다.

4) 저항적 ‘국학’의 위상과 근대성

이용희의 저항민족주의 비판이 갖는 근대주의적 특성은 ‘국학’에 대한 평가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한일회담 반대운동이 불거졌던 당시의 상황에서 ‘외세에 저항하는 민족주의’를 비판했던 이용희의 입장은 마치 ‘굴욕외교’를 옹호했던 것과 같은 체제 순응적인 인상을 준다. 하지만 그런 한편으로 ‘반공을 위한 경제개발’을 추종하지 않고 남북한의 ‘민족국가로서의 통일’⁵⁴을 주장했던 점은 그 역시 체제 반대편에서 ‘저항민족주의’와 맞닿아 있었던 것과 같은 인상을 준다. 이처럼 당시의 담론구도에서 묘한 위상을 연출했던 이용희의 ‘민족주의 비판’이 당시 사학계의 동향을 향해 발화된 것이 ‘국학’을 둘러싼 담화였다고 할 수 있다.⁵⁵

1971년 9월 이용희는 「한국 인식의 방법론」이라는 표제 아래 노재봉과 대담을 진행했다. 서두에 던져진 질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대담은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보았던 그 눈”에 대항하여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한국을 보는 방향”, 그러니까 식민사관의 극복과 민족사학의 확립을 외친

53 『전집』 제2권, 277~280쪽.

54 이용희에게 ‘민족국가로서의 완결’은 동시에 ‘민족통일’을 의미했다. 「현대민족주의」『전집』 제2권, 373쪽.

55 1960년대 민족주의 담론구도에 관해서는 홍석률, 「1960년대 한국 민족주의의 두 흐름」, 『사회와 역사』 62권, 2002.

1960~1970년대 사학계의 동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 자리였다. 우선 이 문제에 대해 노재봉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는데, 지금까지 “주로 국학”을 통해 이루어진 “한국 연구”는 그 내용이 “비과학적인, 혹은 쇼비니스트(chauvinist)적”일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를 윤리적 당위로 내세워 “비분장개조의 방식”으로 서술되는 경향이 통용되고 있다는 것이다.⁵⁶

그런데 이에 대한 이용희의 답변은 다소 아크로바틱하게 전개되었다. 노재봉의 문제제기에 처음에 어리둥절했던 이용희는 그것이 “국학, 기타에 대한 평가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나서는 단숨에 반론을 제기한다. 그 요점은 “실천적인 목적의식”에서 나왔다는 점에서는 피차 마찬가지임을 자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예컨대 “국학이나 실학이나 주자학이나” 모두 “강렬한 실천적인 의식”에서 나왔는데, 이러한 특징은 흔히 “객관적 취급방식, 또는 과학적 취급방식”을 자임하는 입장도, 그러니까 노재봉의 입장도 마찬가지인데, 자신만은 아닌 듯 비판하는 자세는 부적절하다는 것이다.⁵⁷ 유럽의 특수를 마치 보편인 양 가장한 근대에 분개했던 심정을 상기시키는 대목인데, 이처럼 기준을 ‘실천성’에 둔다면 문제는 진실공방보다도 ‘현재적 의의’에서 평가받게 된다. 이용희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국학의 의의’를 논평해 나간다.

국학은 “‘우리’라고 하는 민족관념이 일본, 기타 외국과의 관계로부터 충격”을 받아 위태로워진 상황에서 탄생했다.⁵⁸ 외국문화를 수용하는 과정에 나타난 차이를 “우리 고유의 것”으로 해석하는 그 국수주의적 경향도 일종의 “신비설”에 불과하지만, “비록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것이 없다”는 말이 “항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꾸 프로파간다 되는” 상황에서는 의의가 있었다는 것이다.⁵⁹ “다만 문제는 그 시기가 넘었는데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경우에 있다. 이용희는 노재봉이 문제제기한 것처럼 현재 “일제하

56 『전집』 제2권, 458, 466쪽.

57 『전집』 제2권, 466~467쪽.

58 『전집』 제2권, 461~462쪽.

59 『전집』 제2권, 474쪽.

의 국학운동, 그 민족주의적인 역사관”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면, 그 원인은 바로 현재적 의의에 어긋남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한다.⁶⁰

그렇다면 이용희는 국학의 현재적 의의를 일체 부정했던 것일까. 이 지점에서 논의는 다소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는데, 그는 국학에 대해 두 가지 의의를 겹쳐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현대민족주의」(1973)에서 저항민족주의를 “민족적 저항”과 “민족주의적 저항”으로 나누었던 대목과도 연계되는 시각이다. 민족적 저항은 19세기 후반부터 비유럽지역에서 일어난 운동으로, “침략에 대한 격렬한 민족적 투쟁이기는 하였으나 민족주의적 투쟁”은 아니었다. 이용희는 이보다 앞서 발표한 「한국민족주의의 제문제」(1966)에서 “시기의 문제”에 언급하면서, 한국에서 민족주의는 “한말 근대국가와의 접촉에서 시작”되었다는 견해를 제시했는데, 이로부터 “일제시기”를 거쳐 “해방 후”로 내려오는 동안 한국민족주의는 “한결같이 저항의 민족주의”였다고 했다.⁶¹ 「현대민족주의」(1973)에서는 이에 약간의 수정을 가했던 것인데, “구한말의 척사위정의 격렬한 투쟁”은 “역사적으로 민족적 저항인 점에 의의가 한정되는지 모른다”고 구분했기 때문이다.⁶²

이용희가 이와 같이 구분할 때 ‘민족주의적’이라는 수사는 바로 ‘근대’의 시작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 기점을 이용희는 “제1차 대전”에서 찾는데, 이때 한국의 민족주의는 비로소 “세계적 성격”을 띠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때 “세계적 성격”이란 극렬한 대외적 저항에서가 아니라 이를 수행하는 동안에 알게 모르게 수용된 “시민민족주의 양식”에서 판단되었다. 요컨대 앞서본 ‘대외/내내’의 구분, 혹은 ‘제2/제1’의 도식을 ‘민족적/민족주의적’의 구분에 적용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러한 구분이 ‘국학’에 대한 평가에서도 재현되었던 것이다.

60 『전집』 제2권, 477쪽.

61 『전집』 제2권, 254~256쪽. 이 시기구분의 문제 또한 근대화담론이 불러일으킨 화두 중 하나였다. 신주백, 「1960년대 ‘근대화론’의 학계유입과 한국사 연구」, 56~63쪽.

62 『전집』 제2권, 346쪽.

국학운동이 일제의 과도한 정치적 야욕에서 나온 선전에 저항한다는 것이 노골로 드러났던 것은 사실이지 … 그 당시 그것은 아주 훌륭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 뒤돌아 볼 때 국학운동의 진정한 의미의 중요성은 이러한 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더 중대한 것이 있어요. … 국학운동이라고 하는 국수주의적인 역사관을 통하여 일제의 이데올로기적인 탄압에 저항을 하는 사이에 알게 모르게 유럽적인 근대적 민족주의가 실천적인 지표로서 전개되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요. … 역설적이지만 국수운동을 통해 근대적인 유럽의 민족주의 사상이 완전히 우리 것으로 받아들여졌거든.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 이를 무시하고 있어요.⁶³

이용희는 국학운동을 ‘대외적 저항’의 의미에서만 이해하고 ‘국수주의적 역사관’을 곧이곧대로 평가하는 자세를 비판한다. 그것은 과거의 상황에서는 중요한 의의를 지녔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평가받아야 할 측면은, 그러니까 국학의 ‘현재적 의의’는 국수운동을 통해 역설적이게도 ‘근대적인 유럽의 민족주의 사상’이 받아들여졌던 점에 있기 때문이다.

이용희는 이를 논증하는 사례로 ‘1차대전’을 계기로 일어난 ‘3·1운동’을 든다. 한말의 위정척사 운동이 “존왕주의, 복고, 전통 옹호”⁶⁴에 그쳤던 것과 마찬가지로, 3·1운동 이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의병운동”은 모두 “일종의 복구적 성격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던 것이 “3·1운동에 와서야 비로소” “세계사적인 의식의 조류와 연결”되었다는 것인데,⁶⁵ 이를 ‘민족적’ 저항이 ‘민족주의적’ 저항으로 거듭난 기점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때의 세계성이란 ‘시민민족주의’의 수용에서 판단되는 것이었다. 이를 위의 인용문에서는 ‘근대적 유럽의 민족주의 사상’이라고 표현했던 것인데, 이는 다름이 아닌 ‘단일민족주의’ 사상, 더 정확히는 그 핵심인 ‘자유와 평등의 민주주의’ 사상을 의미했음을 두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63 『전집』 제2권, 477~478쪽.

64 「현대민족주의」, 『전집』 제2권, 346쪽.

65 『전집』 제2권, 479쪽.

그런 의미에서 ‘저항적 국학’에 대한 평가 역시 기왕의 ‘근대주의적’ 기준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이용희의 ‘근대비판’의 착지점

앞장에서는 이용희의 민족주의 비판의 곡절을 통해 그 언설이 갖는 ‘근대주의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냉전 초기에 전개된 ‘단일민족주의 비판’은 일견 내셔널리즘 자체를 비판하는 근대비판적 위상을 지녔지만, 내실은 근대비판적 합의를 지닌 유럽정치사상의 세 번째 맥락을 ‘변질된 근대=지상주의’로 구분하여 비판했던 언설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뒤틀린’ 구성을 지닌 ‘근대주의적’ 특성은 1960~1970년대 전개된 ‘저항민족주의 비판’에도—논리 구도에 약간의 개편은 있었지만—계승되었는데, 무엇보다도 ‘자유와 평등의 민주주의’를 추구했던 측면에서 그의 근대주의 언설이 시대를 이어간 전개양상을 고찰했다.

그렇다면 이용희의 정치학에서 ‘근대비판’은 허구에 불과했는가. 서론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꼭 그렇지는 않았다는 점이 그의 학문의 독특한 위상이다. 다시 말해 ‘근대’와 ‘탈근대’를 동시에 추구하는 복합적인 사유방식이 그 근저를 이루었는데, 이용희 식으로 표현하면 세계사의 ‘뒷바퀴’와 ‘앞바퀴’를 동시에 쫓아가는 것이 ‘나-우리’의 삶이 취약한 처지에서 탈출하기 위한 한국의 ‘실천적 과제’였던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국가의 ‘완결’과 ‘극복’은, 다시 말해 ‘단일민족주의국가’와 ‘다민족주의국가’는 진정 동시에 논의되었던 것이다.

전자의 전개를 살펴본 3장에 이어 4장에서는 이용희의 학문에서 ‘탈근대’의 맥락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디에 착지점을 찾았는지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그가 근대의 ‘모순’을 무엇으로 보았는지를 다시 ‘분노’의 원점에 돌아가 확인한 후(1절), 그것이 냉전 초기 미소 양국을 놓고 제시된 ‘다민족주의 국가론’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2절), 그리고 탈냉전기 유럽의 지

역통합을 놓고 제시된 ‘연방론’에 어떻게 연계되는지(3절) 해명할 것이다.

1) 근대의 ‘모순’과 극복의 시작

세계사는 이미 ‘단일민족주의’를 떠나 ‘다민족주의’를 향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냉전 초기에 잠깐 꽂핀 것이 아니라 1960~1970년대 저항민족주의 비판을 통과하면서도 내내 유지되었다. 그 일례를 1968년의 심포지엄 「한국근대화의 갈등과 조화」에서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오늘날 세계사의 주류가, 적어도 민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단일민족주의로부터 다민족주의로 이미 옮겨져 가고 있는 것은 뼈아프게 깨닫고 있습니다. …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열망하여 마지않는 민족국가로의 통일이나 혹은 우리의 민족주의라는 것은 결국 세계사라는 수레의 뒷바퀴에 붙어서 굴러간다는 것이 되어서 어지간히 겸연쩍습니다. … 내셔널리즘을 극복하고 그리고 세계사의 주류에서 전진하려면 먼저 그 내셔널리즘 위에 서야 된다는 것은 얼마나 커다란 역사의 아이러니입니까?⁶⁶

위에서 이용희는 ‘단일민족주의’로부터 ‘다민족주의’로 발전해 나가는 세계사의 조류 속에서 내셔널리즘의 ‘완결’과 ‘극복’, 그러니까 ‘근대’와 ‘탈근대’의 수레바퀴를 동시에 쫓아가야 할 한국의 아이러니컬한 현주소에 답답한 심정을 드러낸다.

세계사의 발전에는 항상 토대에 모순이 전제되어 있듯이 단일민족주의에서 다민족주의로의 이행과정에도 역시 그럴 수밖에 없는 ‘근대의 모순’이 존재했다. 이용희는 『일반』(1962)에서 근대국가의 역사적 성격을 군사국가와 경제국가, 그리고 식민지국가로 나누어 살피는데, 마지막 ‘식민지국가’에서 근대국가가 맞닥뜨린 ‘자기모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66 『전집』 제2권, 279~280쪽.

유럽 식민지정책은 그것이 알제리 같이 본토에 법률상 편입된 경우 또 소위 식민지법에 의하여 차별적 위치에 있는 경우를 막론하고 정치 및 민족적인 불평등을 조성하였다. 식민지국가와 식민주의는 필연적으로 식민지의 항거, 그것도 근대 유럽정치의 이념에 입각한 반항을 촉발하는데 … 그 반항은 식민지국가에 중대한 문제를 던지게 된다. … 이러한 각도에서 볼 때 식민지는 유럽정치의 일정한 발전단계에 있어서 최대의 자기모순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어있다. … 국민주의와 민주주의의 방향에 선 유럽정치가 비국민주의, 비민주주의를 자체 속에 내포하여야 되고 또 동시에 반항적인 본질적 정치 요인을 스스로 자기 안에 기르고 있다는 사실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⁶⁷

근대유럽의 전파는 그 자체가 식민지의 역사였다. 그 식민화 과정은 어떤 정책 — 이를테면 동화나 자치나 — 을 취하든 간에 ‘민족적 불평등’을 조성했는데, 이것이 근대국가의 모순의 시발점이다. 근대유럽의 전파는 이를 수용한 식민지에서 유럽 자신의 정치이념에 의거한 항거를 불러일으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적 불평등이라는 장벽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하여 필연적으로 식민지국가인 근대국가는 ‘자기 안에 자기모순’을 배태하게 되는데, 이를테면 근대유럽의 정치사상의 핵심인 ‘국민주의 속에 비국민주의’를, 다시 말해 ‘민주주의 속에 비민주주의’를 내포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신 안에 본질적인 반항요인을 기르게 된 것이 유럽 ‘근대의 모순’이었다면, 그 모순이란 바로 ‘식민지’ 자체에 달름이 아니었다. 이 일견 단순한 지적도 ‘식민지’에서 태어난 이용희의, 그것도 그로 인한 ‘삶’에 분노했던 그의 ‘학문’이 찾아낸 지점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그 의의가 심대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근대의 모순’에 관한 언급은 「단일민족주의국가와 다민족주의국가」(1947)에서도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단일민족주의가 확립 — 나폴레옹전쟁 — 된 이후에 전개된 역사과정의 제2단계 막바지에 등장한다. 앞서

67 『전집』 제3권, 235~236쪽.

보았듯이 제3단계는 근대의 변질인 ‘지상주의’의 등장으로 설명되는데, 그에 앞서 제1단계는 대영제국의 발전을 견인력으로 ‘유럽 안에서 민족자결 운동’이 진행된 시기로, 그리고 제2단계는 그렇게 형성된 열강들이 ‘유럽 밖에서 식민지 쟁탈전’을 벌인 시기로 설명되었다. 바로 이 단계 끝에 “단일민족사상 그 자체의 모순”이 나타나는데, “민족자결사상”에서 출발한 “일민족 일국가” 사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식민지를 가진 근대국가는 “밖으로는 타 민족의 민족자결을 부인하고 안으로는 이질적인 민족”을 내포하는 “완전한 모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 장에서 보았듯이 제3단계에 나타난 ‘지상주의’는 이 모순을 ‘극복한 형태’로는 실격했다. 이용희에게 지상주의는 어디까지나 ‘변질된 근대’로 지목되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근대의 모순은 어떻게 극복되었을까. 그는 “제2차대전”에서 “단일민족주의 국가인 영국, 프랑스”는 지상주의 국가를 패배시키기는커녕 “대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한다. 이때 독일과 이태리, 그리고 제국일본을 누르고 영국과 프랑스를 “승리 측에 서게” 해 준 것은 “미국, 소연방의 참가”였다. 요컨대 ‘근대의 모순’에 ‘극복’의 결정타를 날려준 것은 미국과 소련이었다는 주장인데, “미국, 소연방은 우리가 지금 검토해 오던바 단일민족주의국가”가 아니었다. 여기에 이르러 세계는 “새로운 국가체제와 국가관”을 만나게 되는데, 곧 “다민족주의국가”가 등장했다는 것이다.⁶⁸

2) 다민족주의국가의 기저와 ‘동원’이라는 계기

“다민족주의국가란 구체적으로는 미국과 소연방이요.”⁶⁹ 이는 다분히 냉전을 염두에 둔 주장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양국이 근대의 대안으로 등장한 시점은 그보다 앞선 ‘1차대전’으로 설명된다. 이때부터 프랑스혁명을 기점으로 등장한 ‘근대국가’는 세계사의 뒷바퀴로 밀려나고 ‘현대국가’가 앞바

68 『전집』 제2권, 203~204쪽.

69 『전집』 제2권, 204쪽.

퀴로 달리게 되었다는 것인데, 아이러니컬한 것은 한국이 ‘3·1운동’으로 비로소 세계성과 연계되어 ‘근대’를 체득하기 시작했을 때 세계사의 수레바퀴는 바로 ‘현대’로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근대는 현대 속에 아직도 살아있고 현대는 근대의 전개로서만 있다”는 이용희의 말은,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안게 된 과제의 복잡함을 표현했던 것이다.⁷⁰

이러한 관점에 설 때 미소 양국에 대한 관심은 냉전 이데올로기적 차이보다도 현대국가로서의 공통점에 쏠리게 된다. 미소 양국이 근대국가를 능가하게 된 요인이 무엇이었는지, 그 공통된 특징이 정작 탐구되어야 할 과제였기 때문이다. 이용희는 “미국과 소련방에서 공통된 것은 무엇이며 그 차이는 무엇이냐”는 질문을 던지면서 먼저 차이부터 논하는데, 첫 번째 “역사적 성격”에서는 미국이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계승자”라는 점과 소련이 “대내적 계급모순의 타파”로 역사를 시작했다는 점이 강조된다.⁷¹ 이것이 미소 양국이 근대 정치사상—자유와 평등—과 갖는 관계를 밝히는 동시에 냉전의 이데올로기적 측면을 지적한 대목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이후 차이에 관한 서술은 요령부득한 전개를 계속한다.

그런데 그 다음 소절이 나오면서 이용희의 관심이 정작 어디에 있었는지 알게 되는데, 그는 단일민족주의국가와 다민족주의국가의 “군사적 기저”를 비교하면서 미소 양국이 현대의 강대국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원인을 탐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용희는 그 원인을 “동원혁명”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설명해 나간다.

이야기는 다시 근대 전기 전제군주국가로부터 시작하는데, 이때 “총포”의 등장으로 군사적 기술혁신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제3계급의 성장은 상비군의 기반을 닦아 줬다. 그다음 변화는 나폴레옹전쟁을 계기로 성립한

70 『전집』 제1권, 83~84쪽. 이용희는 『원론』에서 ‘현대국가’라는 새로운 국가형태에 나타난 경향을 언급하는데, 그 첫 번째로 제시된 것이 “단일민족주의에 대한 다민족주의 국민관의 대두”였다(83쪽). 그에게 ‘현대국가’란 근대의 극복형태인 ‘다민족주의국가’와 동일한 맥락에서 논의된 개념이었다고 할 수 있다.

71 『전집』 제2권, 204~207쪽.

“국민개병제”로 설명된다. 여기에 “산업혁명”이 겹치자 군산합작의 상승효과로 전쟁의 규모가 확대되었는데, 이로써 동원체제가 구축되었다는 것이다.

단일민족주의 국가의 확립은 실제로 이 “동원혁명”에 의거한 바 컸는데, 그렇지만 동원에는 “자연적 제한”이 수반되었다. 예컨대 “하나는 동원 기저로서의 인구요, 둘은 생산력의 기저인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자연적 한계를 해결해 준 존재가 바로 “식민지”였다. 이용희는 식민지의 획득은 물론 경제적 이윤의 추구에서 비롯되었지만,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전시동원의 부담을 충족시켜 준 점 또한 중요한 의의를 가졌다고 지적한다. 그렇지만 앞 절에서 보았듯이 ‘식민지’는 그 자체로 ‘근대의 모순’이 아닐 수 없었다. 이 점은 동원이라는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질적인 식민지에서 전개된 자결운동은 근대국가에 ‘군사적으로도’ 커다란 불안요인이 되었기 때문이다.⁷²

이리하여 단일민족주의 국가는 또다시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다민족주의 국가는 이 ‘군사적 기저’라는 관점에서도 ‘근대의 모순’을 ‘극복한 체제’로 제시되었다.

이미 다민족, 다인종주의 인지라 그 동원 기저라 할 인구 수효는 단일민족에 비할 바 아니요 또 장차 일총 타민족과의 핵심에 의한 증가가 가능하다. 또 별씨 다민족주의 인지라 각 민족의 영토는 곧 국토가 되고 그 강대하여 가는 토지는 곧 현대와 같은 후방기지의 광대가 곧 작전상 연관되는 시대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나머지는 자원이다. 이러한 광대한 국토를 소유할 시의 일개의 자원 문제가 단일민족에 비하여 어떻다는 것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마침내 다민족주의 국가는 아무런 식민적 불안이 없이 현대군사상의 모든 요청에 적응한 것이 되었다.⁷³

72 『전집』 제2권, 215~219쪽.

73 『전집』 제2권, 220쪽.

이용희는 『원론』(1955)에서 “현대국가”를 논할 때도 위의 세 가지 조건—인구, 국토, 자원—을 언급하고 있었다. “현대국제정치”는 국가들의 “불균등”을 구조적 특징으로 갖는데, 그것은 특히 “국토의 광협” 그 “국토에 사는 국민의 수효” 그리고 그 “인구의 생활을 결정하는 식료의 자급도 및 기타 자원의 유무”에서 두드러진다는 것이다.⁷⁴ 이는 서로 비슷한 규모의 국가들이 옥신거리며 발전해 온 ‘근대유럽의 국제정치’와는 정반대의 상황을 의미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근대국가의 발전의 기저였던 ‘동원의 세 조건’을 모두 겸비하면서도 근대의 모순이었던 ‘식민지’를 갖지 않은 나라는 바로 미국과 소련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현대국가’는 따라서 필연적으로 ‘다민족주의국가’를 의미한다. 이들은 더 이상 ‘자결주의’에 의거하지 않는 대신 ‘동원’에 필요한 군사적 기저를 모순 없이 이룩하며 “부국강병”的 현대적 기준”을 달성했다. 이러한 안목에서 볼 때 한국의 현재란 어떻게 인식되었을까. 이용희는 「현대민족주의」(1973)에서 한국의 민족주의를 “매우 고독한 처지”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분단된 ‘단일민족주의’”에 문제의식을 드러낸 표현이었다는 점에서 민족국가로서 완결—민족통일—을 촉구하는 말이었지만, 한편으로 “지역성”을 “그 이념적 주류”로 갖는 “현대민족주의”的 성격에 비춰볼 때⁷⁵ 절망스러운 한국의 주변환경을 한탄한 말이기도 했다. 한국을 둘러싼 “주변의 제3국”—일본, 중국, 소련—은 모두 “강대세력들로서 역사로 보아 한국민족주의의 도움되는 민족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⁷⁶

‘지역성’의 확보가 어려운 동아시아의 정치상황은 ‘현대국가’를 이룩하는 데 치명적인 여건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탈식민’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과거의 제국처럼 ‘식민지’를 부국강병의 기저로 획득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이용희의 말대로 당장 “남은 길은 민족통일”밖에 없었

74 『전집』 제1권, 86~90쪽.

75 『전집』 제2권, 355쪽.

76 『전집』 제2권, 371~373쪽.

는데,⁷⁷ 이렇게 ‘근대’를 추구하는 한편 이를 넘어서는 ‘지역’에 대한 상상력을 이어 간 것이 ‘다민족주의 국가론’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군사적 기지’를 중심으로 논의된 다민족주의 국가론은, 그것이 자결주의에 구애받지 않은 국가형태였음을 사실이나, 그 새로움에 관해서는 결국 대규모의 전쟁동원을 ‘식민지 없이’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찾기 어려운 논의였다. 요컨대 다민족주의 국가란 말 그대로 현대판 강대국일 뿐이지 이를테면 ‘식민지 없는 제국주의’와 어떤 차이를 갖는지 불투명했다. 그렇다면 그 극복의 형태라는 것도 재고가 불가피하다. 다시 말해 이용희의 ‘탈근대’ 언설이란 정작 ‘근대’를 비판했던 것인지, 단순히 ‘제국’이 되고 싶었던 식민지인의 열망의 서사가 아니었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에 앞서 먼저 이용희에게 ‘동원이라는 계기’가 어디서 연유했는지 그 사상적 배경을 좀 더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필자는 이용희의 탈근대 언설이 ‘제국의 서사’였다고 보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착상을 얻고 어디로 정착했는지는 ‘만주’에서의 경험과 거기서 일어난 ‘정치’와의 만남을 재음미해야 비로소 이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먼저 현실적인 측면부터 보면 이용희가 만주에 거처를 옮긴 1940년경 그곳은 고도국방국가를 위한 동원체제의 구축이 한창 진행 중에 있었다. 특히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그가 “월급을 많이 준다기”에 처음에 취직한 “만주 괴뢰의 어용단체”⁷⁸—협화회—는 동원체제의 원활한 운영을 맡았던 단체로, 특히 중국인 지주층이 지배한 농촌사회와 관동군이 실권을 장악한 중앙 정부 사이에서 가교를 놓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협화회가 건국 전기의 정예중심 정책에서 후기의 대중노선으로 전환했던 것도 이와 같은 역할을 빼놓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⁷⁹

77 『전집』 제2권, 373쪽.

78 『전집』 제6권, 44쪽.

79 만주국의 체제구축과 협화회의 역할에 관해서는 平野健一郎, 「滿州国協和会の政治的展開: 複数民族

2장에서 언급했듯이 이용희는 만주에서 일본인과 중국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 특히 이들에 대한 ‘일본의 통치형태’를 보면 서 그동안 현실도피했던 ‘정치’를 직시하게 되었다. 이때 이용희가 봤던 현실이 과연 어떤 것이었는지는 추측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만주국이 결코 ‘이상’—오족협화—만으로는 넘어서 수 없었던 ‘현실’—지상주의—을 봤던 것도 진실일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식민지’가 아닌 ‘다민족 제국’의 형식을 취한 만주국이 ‘전쟁동원’은 이용희에게 국가를 기초 짓는 또 다른 현실을 보여 줬는지도 모르겠다.

이 점에서 이용희가 만주시절에 영향받은 ‘정치학’ 서적으로 카(E.H. Carr)의 『20년의 위기』(1939)를 들고 있었던 사실은 한층 더 의미심장한 울림으로 다가온다. 부친의 야단으로 협화회를 그만둔 이용희는 “무역한답시고 원산서 해산물을 가져다 봉천, 하얼빈 등”에서 팔며 생계를 이어 갔는데, 그 무렵 만철도서관을 드나들다가 대련에서 카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이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의 고전을 “상당히 흥분”하면서 읽었다고 회고를 남기는데, 이 때문에 『20년의 위기』의 중요성은 지금까지 언급되는 일이 많았다.⁸⁰ 하지만 본고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태평양전쟁 직후에 출간된 『평화의 조건』(1942)이 갖는 의의이다.

이용희도 회상하듯이 당시 독일의 국가학은 비교적 입수가 용이했지만 “영미 것”은 “수입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제국의 최첨단 만주에서 카를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일본의 지식계에서 카에 대한 관심이 높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당시의 관심은 이미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았던 『20년의 위기』보다는 『평화의 조건』에 더 쏠렸다. 이는 당시 카의 저작이 ‘근대에 대한 물음’을 배경으로 읽혔기 때문인데, 이용

国家における政治的安定と国家動員』、『年報政治学』23卷、1972; 三谷太一郎、「満州国国家体制と日本の国内政治：戦時体制モデルとしての満州国」、『近代日本の戦争と政治』、岩波書店、1997。

80 예컨대 옥창준, 「이용희의 지식 체계 형성과 한국 국제정치학의 재구성」, 107쪽; 강동국, 「국제정치학자 이용희의 탄생」、『한국 국제정치학, 미래 백년의 설계』, 53~54쪽. 특히 강동국의 경우 카의 『평화의 조건』이 당시 일본의 지식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다만 이를 이용희의 정치학과 관련짓는 시각은 없다.

희 역시 카의 논의가 지난 ‘근대비판적’ 문맥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수용의 방식은 일본의 지식계와 조금 다른 전개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이하에서는 이 문제를 카의 ‘냉전적 전유’라는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다민족주의 국가론’의 성격을 이해해 보고자 한다.⁸¹

카가 말하는 ‘20년의 위기’란 19세기 말에 이미 파탄 나 있던 벤담주의적 유토피아니즘을 미국이 처녀지나 마찬가지였던 1차대전 후의 국제정치에 이식한 데서 기인한 것이었다. 공리주의에 대해, 전통적 자연법이 맡아온 절대적 윤리 기준을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이성적 윤리로 바꿔치기한 사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카의 논의에는 근대 ‘자유주의’에 대한 강한 비판의식이 함축되어 있었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결론에서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한 전망이 제시되었는데, 이때 카는 프랑스혁명 아래 발전해 온 민족국가(nation-state)의 단위로서의 적합성에 경종을 올렸던 것이다.⁸²

요컨대 ‘시대착오적 벤담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한 카의 논의에는 ‘자유주의’를 매개하여 국제정치의 단위로서의 ‘민족국가’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는 맥락이 거기에는 존재했는데, 다만 『20년의 위기』는 ‘근대비판’이라는 점에서는 어디까지나 문제제기에 그친 저작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때의 논점을 보다 구체적인 청사진을 가지고 나온 것이 바로 『평화의 조건』이었다.

『평화의 조건』에서 단위로서의 ‘민족국가’에 대한 비판은 ‘자결주의’(self-determination) 비판으로 계승된다. ‘일민족 일국가’라는 자결원칙이 억지로 적용된 결과 유럽은 서로 규모가 다른 국가들이 연립하는 상황으로 변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약소국은 스스로 군사적 독립을 포기하는 방법 외

81 전시기 일본에서 이루어진 카의 수용에 관해서는 酒井哲哉, 「戦後外交論の形成」, 『近代日本の国際秩序論』, 岩波書店, 2007(장인성 옮김, 『근대일본의 국제질서론』, 연암서가, 2010); 西村邦行, 「日本の国際政治学形成における理論の〈輸入〉: E. H. カーの初期の受容から」, 『国際政治』第176号, 2014. 이용희 역시 당시 이 책을 접했던 가능성이 높은데, 구입한 시점은 알 수 없으나 명지대에 소장된 이용희 문고 목록을 통해 그가 카의 *Conditions of Peace*(London: Macmillan & Co. Ltd, 1942)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은 확인된다.

82 E. H. Carr, *The Twenty Years Crisis, 1919–1939*, London: Macmillan & Co. Ltd, 1946.

에 강대국에 대해 독립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은 “독립(independence)”이 아니라 “상호의존(interdependence)이 생존의 불가피한 조건”이 되었다는 것이 카의 주장이었다. 중요한 것은 “자결주의의 위기”를 말하는 카의 이러한 주장이 무엇보다도 그의 전쟁관, 특히 “전쟁의 근대적 조건”에 대한 이해에 의거했다는 점이다. 이 점은 앞서 본 이용희의 다민족주의 국가론, 특히 ‘군사적 기저’를 강조했던 그 시각에 비춰 볼 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논점이라고 할 수 있다. 카는 “소총이 공격의 주된 무기며 요체가 난공불락의 장벽이었던 시대”에는 “군사력의 격차”가 승부를 가리는 결정타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1914년에는 이미 그러한 상태는 사라져가고” 있었다고 지적한다. 즉 ‘근대전’의 발전이 불균형한 국력의 격차를 생존의 결정요인으로 바꿔 놨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는 ‘자결주의’는 모순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다.⁸³

애초에 『평화의 조건』 자체가 ‘전쟁’을 배경으로 써진 책이기도 했다. 카는 전쟁이 갖는 ‘혁명적 작용’에 2차대전 후의 ‘평화’를 구축할 가능성을 봤던 것인데,⁸⁴ ‘자결주의’ 또한 이 과정에서 극복되어야 할 ‘19세기적 유제’로 판정받은 것이다. 그러한 카가 전후의 평화체제로 제시한 대안이 바로 ‘유럽지역’을 단위로 한 ‘계획경제’ 체제였다. 이는 19세기적 ‘자유방임’ 체제와 대비되는 대안으로, 그런 의미에서 탈근대적 체제를 의미하기도 했다.

이 “계획경제”는 이미 1914~1918년의 전쟁에서 모든 교전국들에 처음 등장”했던 것이었다.⁸⁵ 즉 1차대전을 기점으로 등장했다는 말인데, 이것이

83 E. H. Carr, *Conditions of Peace*, London: Macmillan & Co. Ltd, 1942, pp. 53~54.

84 카의 전쟁관에 대한 지적은 三谷太一郎, 「戦時体制と戦後体制」, 『近代日本の戦争と政治』, 1997, 25~28쪽. 『평화의 조건』이 첫 장을 「전쟁과 혁명」으로 시작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카의 전쟁관의 특징은 ‘변혁성’에 대한 주목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미타니의 연구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미타니가 지적한 카의 특징은 이용희의 전쟁관을 살핀 조동준의 지적과도 상통한다. 조동준은 전쟁에 대한 이용희의 관심이 전쟁의 발생 원인이나 전장에서 벌어진 현상이 아니라 ‘전쟁이 근대국가의 형성에 미친 영향’에 집중되었던 점을 지적하며, 그러한 관점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이용희가 사용한 ‘자기전개’라는 말에 주목한다. 이는 전쟁의 ‘구성적’ 역할을 표현한 개념이라는 점에서 카의 ‘변혁성’과 연관된다고 본다. 조동준, 「동주의 전쟁관」,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엮음, 『한국 국제정치학, 미래 백년의 설계』, 175~197쪽.

85 E. H. Carr, *Conditions of Peace*, p. xix.

‘시대착오적 방임주의’로 20년 동안 위기에 빠져 있다가 재기될 기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 카가 봤던 1939년 이후의 유럽의 상황이었다. 바로 이 지침에서 카는 ‘히틀러’를 나폴레옹의 ‘혁명적 역할’에 빗대어 평가해 버린다. 히틀러는 월슨이 망치고 레닌이 하다 못한 혁명을 계승한 존재로, 따라서 ‘계획경제’란 히틀러가 이끈 독일이 제창한 ‘유럽의 신질서’ 구상을 현실적 반침대로 제시된 대안이 다름이 아니었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이용희에게 독일은, 그리고 ‘동아신질서’를 외친 제국일본은 근대의 대안으로 실격한 존재가 다름이 아니었다. 이들은 근대의 모순이 극한에 달했을 때 나타나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변질된 근대=지상주의’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결론의 같고 다름이 아니라 논리구도의 유사성이다. ‘근대전’을 토대로 ‘자결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그 대안으로서 ‘지역주의’로 나아가는, 이 ‘전쟁동원-자결주의-지역주의’로 구성된 구도를 통해 이용희의 ‘다민족주의 국가론’에 카의 그림자를 보는 것은, 만주에서 일어난 ‘정치학’으로의 전환에 카와의 만남이 있었던 점을 상기한다면, 결코 무모한 추측은 아닐 것이다.

카는 『평화의 조건』에서 “자결주의의 장래”를 논하면서 아래와 같이 강조한다.

첫째로 우리는 민족(nation)과 국가(state)가 보통 일치해야 한다는 19세기적 가설을 폐기해야 한다. 중유럽에서 유래한 이 서투르지만 편리한 용어와 관련하여, 우리는 ‘문화주체로서의 민족’(cultural nation)과 ‘국가주체로서의 민족’(state nation)을 구별해야 한다.⁸⁶

위 문장을 통해 상상되는 ‘유럽지역’의 장래는 분명히 ‘다민족공간’이다. 다만 유럽이 아닌 ‘동아시아’에 거처한 한국의 현재는 이 공간을 이룩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상황에 있었다. 앞서 보았듯이 이용희에게 한국은

86 E. H. Carr, *Conditions of Peace*, p. 62.

‘고독한 처지’에서 ‘지역성’을 함께할 친구도 없이 ‘분단’된 한쪽 날개의 ‘봉합’에도 숨가쁜 ‘근대-뒷바퀴’를 쫓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⁸⁷ 대신 이용희가 ‘탈근대-앞바퀴’를 달성한 존재로 지목했던 것이 ‘다민족주의 국가’로서의 ‘미소’ 양국이었다. 이 점에서 필자는 이용희가 ‘냉전’이라는 전후의 새로운 국제정치 현실에 카의 논의를 투영시켜 ‘나-우리’를 둘러싼 상황을 읽어내고 있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냉전 초기 이용희의 ‘다민족주의 국가론’은 전시기의 카의 논의를 해방 후 ‘냉전형으로 전유한 언설’이었다고 할 것이다.

3) 탈냉전과 ‘연방’의 주권론

이용희의 연방론은 다민족주의 국가론의 연장선상에서 전개되었다.⁸⁸ 다만 이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먼저 현실에서 커다란 변화—냉전붕괴—가 있었고, 또 그것과 무관하지 않은 변화로 ‘주권론’을 재론하기 시작한 점이다. 3장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용희의 근대주의 언설—단일민족주의 비판이나 저항민족주의 비판이나—은 줄곧 ‘민주주의’를 중시했다는 점에서 ‘인민주권론’이었다. 그렇다면 그의 탈근대 언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새로운 논의가 이루어져야 진가가 측정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탈근대의 첫발을 뗀 다민족주의 국가론은 너무나도 ‘군사적 기저’에 집중된 논의였다. 그것은 근대의 대규모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동원’의 기저—국토, 인구, 자원—를 ‘식민지’라는 근대의 모순 없이도 이룩한 국가형태를 논의한 것으로, ‘탈식민’의 언설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결주의’에 대한 비판도 함축했지만, 국가형태의 구조적 변화가 그 정치이념에

87 이용희는 「현대민족주의」(1973)에서 분단된 한국의 고독한 처지를 “날개 잊은 단일민족주의”라고도 표현했다. 『전집』 제2권, 373쪽.

88 이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로, 이용희는 『원론』에서 ‘현대국가’에 나타난 경향 중 첫 번째를 ‘다민족주의’로 지적한 다음, 두 번째로 바로 “연방제”를 들고 있었다(『전집』 제1권, 83~84쪽). 또한 「현대민족주의」에서도 ‘지역성’이 주된 요소임을 나타내는 예로 “민족주의의 발상지였던 서유럽”이 “경제통합체로 변모”하고 있는 점을 들어 “다민족주의로 발전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었다(『전집』 제2권, 356쪽).

어떤 질적 변화를 야기하는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채 남아 있었다.

그렇다면 탈냉전기에 논의된 연방론은 이 점에서 어떠한 함의를 가졌을까. 이용희는 1993년에 서울대 외교학과 대학원에서 연속강의를 한 내용을 담아 『미래의 세계정치』(이하, 『세계정치』)를 출간했다. 강의에서 밝히고 했듯이 그 발단에는 전년의 마스트리히트조약을 놓고 주권의 양도와 근대국가의 변화를 지적한 하영선 교수의 문제제기가 있었다.⁸⁹ 그런 의미에서 이 강의는 처음부터 ‘주권’을 논의의 중심에 놓고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첫 강을 이용희는 ‘내이션’의 두 가지 의미를 구분하면서 시작한다.

나시옹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공동체로서의 나시옹,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미에서 어느 나라의 나라를 상징하는 ‘국민 정치공동체로서의 나시옹’입니다. 또 하나는 문화적인 의미에서 어느 나라를 구성하는 ‘문화공동체로서의 나시옹’입니다.⁹⁰

앞서 인용한 카의 구분—‘문화주체’와 ‘국가주체’—까지 방불케 하는 구절인데, ‘문화공동체로서의 나시옹’에 대해서는 사회학에서 말하는 에스닉 그룹(ethnic group)이나 에스니시티(ethnicity), 혹은 독일의 게마인샤프트(Gemeinschaft)와 같은 의미라는 설명이 덧붙여졌다.⁹¹ 이러한 구분 자체는 오늘날 내셔널리즘 이론에서 보면 일종의 정설을 말한 것에 불과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용희가 ‘정치적 공동체’와 ‘문화적 공동체’라는 구분을 서두에 놓고 이후 ‘주권의 소재’를 둘러싼 논의로서 연방론을 설명해 나가고 있는 그 맥락이다.

이용희는 내이션의 구분에 바로 이어 ‘연방’과 ‘국가연합’의 개념을 정리한다. 양자는 “일정한 영토지역(territoriality) 내에서 헌법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라는 두 가지” 정치체를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전자

89 『전집』 제5권, 48쪽.

90 『전집』 제5권, 13~14쪽.

91 『전집』 제5권, 22쪽.

가 “두 정부에 대해서 같은 권한을 인정하는” 한편 후자의 경우 모든 권한은 지방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방정부라는 말이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 여기서 후자란 ‘주권’을 가진 근대국가로 구성된, 말 그대로 ‘국가의 연합’이라는 의미로 정의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달리 전자의 경우 권한의 “반은 중앙에 있고 반은 지역에” 있는, 말하자면 주권의 ‘나눠가짐’(양도)이 발생한 정치체를 의미한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소재’가 문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⁹²

이러한 구분은 이용희도 주기하듯이 “‘고전적인 주권에 비하면’이라는 단서”가 붙은 정의에 불과하다.⁹³ 다시 말해 보댕에서 비롯된 ‘불가양 불가침’의 주권 개념을 전제로 볼 때의 구분이라는 뜻이다.⁹⁴ 이어지는 강의에서 이용희는 주로 ‘연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주권론의 관점에서 볼 때 그의 관심은 ‘연방’에 귀착된다. 이하에서는 이 점을 이용희가 연방에 관한 사상사적 맥락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통해 살펴보는데, 구체적으로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푸펜도르프-토크빌-슈미트’로 이어지는 논의의 맥락이다.

이용희는 “confederation”⁹⁵을 둘러싼 사상의 역사를 다루면서, 먼저 푸펜도르프의 『자연법과 만민법에 대하여』(*De Jure Naturae et Gentium*, 1672)가 갖는 의의를 강조한다. 그가 이 책에서 흥미를 가진 부분은 푸펜도르프가 연방을 “‘산만한(loose) 콘페데라티오’와 ‘밀도가 있는(close) 콘페데라티오’”로 구분했던 점이다. 전자는 “자연에 의해서 뭉쳐진” 집단, 예컨대 “언어, 종교, 관습이 같고 혈연, 지연 관계가 있는 집단들”을 의미하는데, 이는 첫 강에서

92 『전집』 제5권, 62~63쪽.

93 『전집』 제5권, 79쪽.

94 보댕의 주권론이 유럽통합에 갖는 사상사적 의의에 대한 가장 간결한 설명은 최정운, 「국제화의 이론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 유럽 통합과 국가 권력」, 『세계정치』 19권 1호, 1995.

95 『전집』 제5권, 127쪽. 이용희는 ‘confederation’을 처음 ‘국가연합’으로 번역했는데, 이후의 서술에서 그 개념은 ‘연방’과 겹치기도 하며 또 구분되기도 하는 등 일정하지 않은 모습을 반복한다. 본인도 인정하듯이 역사적인 개념인 만큼 혼잡해질 수밖에 없는는데,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쓰임새를 염두에 두고 ‘연방’으로 총칭하기로 했다. 연방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뒤에서 밝히겠지만 이용희가 최종적으로는 슈미트의 ‘분트’(Bund, 연방) 개념에서 주권 문제를 풀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시한 ‘문화적 공동체’의 속성을 연상시키는 종류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후자는 신성로마제국처럼 “왕을 중심으로 몰려 있는 경우”와 “어떤 중심이 없는 상태에서 연합해 있는 경우”로 나누어지는데, 어느 쪽이든 ‘정치적 공동체’를 의미하는 종류이라고 할 수 있다. 이용희는 푸펜도르프가 후자인 ‘중심이 없는 정치적 공동체’를 “콘페데라티오”로 생각했다고 보는데, 다만 “보령의 주권론”的 질은 영향하에 있던 푸펜도르프는 어디까지나 “구성 부분에 주권”이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⁹⁶

토크빌은 이를 벗어난 논의를 전개한 사람으로 거론된다. “기왕에는 주권 개념에 사로잡혀서 보령이나 푸펜도르프 같은 사상가들”은 “주권이 둘로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토크빌은 이미 “주권의 양분”이 현실이 된 미국에서 논의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용희가 흥미를 가진 부분은 ‘정치적 공동체’의 측면에 나타난 푸펜도르프와 토크빌의 차이보다는 ‘문화적 공동체’의 측면에 나타난 양자의 공통점이었다. 토크빌은 주권의 양분을 논하면서 한편으로 미국의 국민생활에 나타난 동질성, 예컨대 “언어가 같고, 풍습이 같고, 종교가 같고, 같은 문명으로 뭉쳐 있는 그런 동질성”에 주목했는데, 이용희는 이러한 토크빌의 관심이 “푸펜도르프가 ‘느슨한 콘페데라티오’에서 동질성을 강조한 것과 비슷”한 맥락에 있다고 강조한다.⁹⁷

요컨대 이용희는 주권에 관한 논의를 ‘정치적 공동체’와 ‘문화적 공동체’를 구분하면서 시작했고, ‘주권을 양분’한 토크빌의 논의에서 푸펜도르프의 ‘느슨한 콘페데라티오’(문화적 공동체)가 계승되어 있는 점을 강조했는데, 슈미트가 등장하는 대목에 이르러서야 이용희가 왜 그랬는지 정확한 합의를 알게 된다. ‘문화적 공동체’에 대한 강조는 연방의 유대감을 받쳐 주는 수준의 보완적 의미가 아니라, 바로 주권의 ‘탈근대적 변용’을 지탱하는 논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96 『전집』 제5권, 129~130쪽.

97 『전집』 제5권, 143~145쪽.

빈체제에서 비스마르크 치하에 이르는 동안 독일의 헌법학자 사이에서 벌어진 논쟁 역시 ‘주권의 소재’를 둘러싼 것이었다. 토크빌의 영향을 받은 바이츠(Georg Waitz)가 양분론의 입장에서 ‘Bundesstaat’(연방국가) 개념을 제시하는가 하면, 자이델(Max von Seydel)은 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중앙의 주권을 주장했다. ‘불가양 불가침’의 절대권력을 누가 가질 것인가를 둘러싼 이 혼잡한 논쟁은 19세기 말에는 극한에 달했는데, 변화의 계기는 먼저 현실 측에서 일어났다. 1차대전에서 패망한 독일제국이 바이마르공화국으로 거듭났기 때문이다.

이 바이마르시대에 출간된 것이 바로 슈미트의 『헌법론』(*Verfassungslebre*, 1928)이었다. 이용희는 여기에 이르러 소재를 둘러싼 주권론에 중지부가 찍어졌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 초기 슈미트의 저작에서 특히 이용희가 주목한 부분은 권말에 제시된 ‘연방론’이다. 이용희는 그 내용을 길게 소개하는데, 그렇게 조리 있는 설명은 아니었지만 요점은 확실했다. 먼저 이용희는 슈미트가 주권 논쟁의 초점을 “분트”(Bund)라는 성격이 과연 무엇이냐”는 문제로 바꾼 점을 평가한다. 다시 말해 ‘소재’에서 ‘속성’으로 논의의 초점을 치환시켰다는 지적인데, 기왕의 헌법학자들이 모두 주권을 ‘법적으로’ 해석했던 반면 슈미트는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한 데서 비롯된 전환이었다.

그러니까 이용희는 여기서 슈미트의 ‘결단’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데, 슈미트는 주권을 “어떤 비상한 상태에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으로 보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주권을 정치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기왕의 “주권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분트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연방(중앙)과 구성국(지방)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났을 경우의 묘사로 이어지는데, 만약 구성국이 “전체의 다수결에 반대하는 경우” “분리”하느냐 “복종”하느냐를 놓고 결단이 요구되는 사태가 초래된다. 이를 거꾸로 말하면 연방에게도 구성국에 대한 “제재 결정”을 “결단”해야 하는 사태가 초래된 것인데, 어느 쪽에서 보든 간에 여기서의 해결은 “실존적인 의미의 정치적 능력”에 달리게 된다. 그러므로 슈미트의 연방에서 주권의 문제는 ‘정치적 결단’의 문제로 재해석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연방의 속성을 설명하고 나서 이용희는 다만 “슈미트 이론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나올 부분”에 있다고 강조 한다. 즉 연방에 대한 ‘정치적’ 설명이 슈미트의 이론의 핵심이 아니라는 말 인데, 이용희가 중요하게 보았던 것은 슈미트가 연방에 내재된 “모순”을, 그러니까 주권의 소재를 둘러싼 그 문제를 “‘동질성’(Homogenitat) 논의”로 해결하려고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이용희는 이를 “푸펜도르프나 토크빌”에서 봤던 ‘문화적 공동체’와 같은 맥락에서 전개된 논의로 보았다.⁹⁸

이상 보았듯이 이용희는 연방의 사상을 ‘푸펜도르프-토크빌-슈미트’로 이어지는 맥락을 중시하며 이해했다. 슈미트로 이르러 그것이 ‘근대적 주권’ 관념을 넘어서는 합의를 가졌던 점이 드러나는 동시 이 탈근대적 극복의 요인으로 ‘문화적 동질성’을 중시했던 점이 확인되는데, 이상의 내용은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한 합의를 갖는다. 우선 1) ‘소재’를 묻는 주권론으로부터의 탈피는 곧 이용희의 논의가 ‘인민주권론’의 범위를 벗어났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2) 탈근대적 주권론을 뒷받침하는 ‘문화적 동질성’의 강조는 곧 이용희의 ‘권역론’과도 맞닿는 논점이었다는 점이다. ‘문화적 공동체’에 관한 논의는 이용희가 ‘분열’로 표현했던 공동체의 과편화 방향과도 연계되지만 ‘통합’의 방향과 연계되었을 때 그 단위는 ‘지역’으로 확장된다.⁹⁹ 이 점에서 유럽의 지역통합을 놓고 전개된 이용희의 연방론은 ‘근대적 주권’ 관념이 지향된 ‘탈근대적 권역론’의 위상을 지녔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탈냉전기 이용희의 연방론이 그의 ‘정치학’에 갖는 상징적인 합의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런데 여기서 이용희가 누락시키고 있는 문맥을 부연하자면, 슈미트가 말하는 연방의 ‘속성’이란 물론 결단의 문제와 관계되는 것이었지만, 더 정확히는 결단을 내리는 사태—주권의 등장—보다는 그러한 사태가 ‘나타

98 여기까지 『전집』 제5권, 175~179쪽.

99 이용희가 첫 강에서 ‘정치/문화’ 공동체 논의를 제시한 것은 ‘통합’을 논의하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분열’의 역학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이 ‘통합’과 ‘분열’이라는 관점은 강의 전체를 통해 거듭 강조된다. 예를 들어 『전집』 제5권, 48~49쪽, 328~334쪽.

나지 않음으로써’ 유지되는 연방의 성립요건과 관계되는 것이었다. 이 점은 이용희도 언급한 ‘모순’에 대한 슈미트의 설명에 잘 나타나는데, 슈미트는 연방의 “가장 일반적인” 모순을 오랜 주권 논쟁을 배경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모든 연방은 국가연합이냐 연방국가냐의 구별에 관계없이 하나의 전체의사와 정치적 실존을 갖는다. … 그 결과 연방에는 연방이라는 전체실존과 구성국이라는 개별실존이라는 두 가지 정치적 실존이 병존한다. 이 두 가지 정치적 실존은 연방이 존속하는 한 병존해야 한다. … 연방은 이 실존상의 결합 및 그 균형 위에 성립하는 것이다. 양단을 향한 단계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극단은 항상 연방이 해체되어 개별국가만 실존하거나 개별국가가 소멸되어 단일한 국가가 존속하거나 둘 중의 하나이다. 연방의 본질은 정치적 실존의 이원주의, 즉 한 쪽에서 연방적 공존 및 정치적 통일체를 이루고 다른 한쪽에서 복수자가 존속하는, 말하자면 복합적 정치단일체로서의 결합에 있다. 이와 같은 부동(浮動)의 상태는 그 자체로 결판을 지어야 할 수많은 충돌을 야기한다.¹⁰⁰

연방이란 ‘전체실존’과 ‘개별실존’이 병존하는 정치체로서, 양자가 ‘실존상의 결합 및 그 균형’을 유지하는 한에서 성립한다. 연방의 본질(속성)은 이와 같은 ‘실존의 이원주의’에 있는데, ‘전체’ 혹은 ‘개별’ 어느 쪽에 기울어지든 간에 이원적 상태의 붕괴는 곧 일원적 구조로의 회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연방의 해체란 ‘복합적 정치단일체로서의 결합’이 깨지는 상황을 의미했는데, 그것은 바로 ‘주권의 등장’으로 초래된다. 슈미트는 인용문 말미에 이와 같은 연방의 속성을 ‘허공에 떠서 움직이는’(부동) 상태라고 표현하는데, 이야기로 ‘소재’가 정해지지 않는 주권 논쟁의 정곡을 찌른 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소재의 확정이 연방을 붕괴시키듯이 ‘결단’의 등

¹⁰⁰ Carl Schmitt, 阿部照哉·村上義弘 訳, 『憲法論』(みすず書房, 1974), 424쪽. 이 책은 이용희가 소지하고 있던 『Verfassungslehre』(Berlin: Duncker & Humblot, 1954)의 번역본이다. 초판은 1928년에 나왔다.

장 또한 그것이 ‘주권’을 의미하는 한 연방을 해체시킨다.

그런 의미에서 “주권의 문제는 실존이 걸린 충돌에 대한 결정의 문제”라는 이용희의 설명은 맞지만,¹⁰¹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여기서 슈미트는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결단-해체를 부르는 ‘충돌’이 나타나지 않게끔 해 주는 무엇인가를 논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연방의 ‘모순’을 해결해 주는 “연방 구성국의 동일성”이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용희가 주목한 ‘문화적 동일성’은 “연방 내부에서 극도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 주는 연결 끈과 같은 것이었으며,¹⁰² 단순한 보완적 유대를 넘어 ‘탈근대적 권역’ 자체를 지탱해 주는 성립요건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권역의 성립은 주권 논의를 ‘소재’에서 ‘운영’의 차원으로 옮겨 준다. 비록 중간에 세밀한 문맥을 빠뜨리기는 했지만, 이용희 역시 이 점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주권을 ‘법’이 아니라 ‘정치’의 문제로 전환시킨 슈미트의 이론을 연방의 사상으로 설명한 다음에, 실제 유럽의 통합과정에 나타난 주권 논의에서 ‘공유’라는 관점에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제정치학에서 근대적 주권은 확실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유럽공동체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나오겠지만, 주권 공유(sharing of sovereignty)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대적 의미에서 보면, 주권이 공유될 수 없는 불가분, 불가양의 최고 권력이라고 규정되는데, 주권이 공유된다는 이야기는 확실히 근대적 주권 관념이 변화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고전적인 주권 이론에 의하면, 다른 나라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권은 주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인데, 지금 유럽공동체를 논하는 경우 주권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새로운 의미의 주권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 아직도 짙은 안개 속에 가려진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¹⁰³

101 Carl Schmitt, 『憲法論』, 424쪽.

102 Carl Schmitt, 『憲法論』, 428쪽.

103 『전집』 제5권, 255~256쪽.

필자가 보기에는 이 짙은 안개 속에서 슈미트의 연방론을 불잡고 푸펜도르프까지 거슬러 올라간 것이 이용희의 사색이 아니었을까 싶다.¹⁰⁴ 지금 까지 밝힌 이상의 전거를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위에서 유럽통합에 나타난 ‘주권의 공유’(sharing of sovereignty)라는 관점을 이용희는 ‘근대적 주권’의 변용으로, 그러니까 ‘탈근대적 주권’ 논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이용희가 말하는 ‘공유’는 ‘양분’과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개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양분은 어디까지나 ‘누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소재의 모순을 나타내는 개념이었다면, 공유는 ‘모두가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 시작하는 논의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 어떻게 공유하고 있는지’ 그 ‘운영’의 방식이 문제가 되는 개념이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점을 논의함으로써 이용희의 탈근대 언설이 탈냉전기에 찾게 된 착지점이 한국의 국제정치학에 어떠한 함의를 가졌는지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5. 나가며: 근대의 밑바닥에서 ‘제왕’ 되기

본고에서는 이용희의 국제정치학에서 ‘한국적’ 특성이란 무엇인지 물음을 실마리로, 그의 학문의 전개를 ‘근대’와 ‘탈근대’의 복합적인 사유방식에 유의하여 살펴보았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민족주의 비판’ 언설에 주목하여 그것이 역설적으로 ‘근대주의적’ 특성을 지녔던 점을 근대유럽의 정치사상사에 대한 그의 이해를 바탕으로 밝혔다. 이용희의 민족주의 비판은 냉전 초기에는 ‘단일민족주의’ 비판으로, 1960~1970년대에는 ‘저항민족주의’ 비

¹⁰⁴ 슈미트는 『헌법론』에서 연방의 영속성—동맹과의 차이—을 설명하는 항목에서 이용희가 연방의 사상의 서두에 제시한 푸펜도르프의 『자연법과 만민법에 대하여』(1672)를 주기로 달고 있었다(Carl Schmitt, 『憲法論』, 420쪽). 또한 본론에서도 언급한 자이델에 관한 인용이나 독일 헌법학계의 논쟁 양상에 대한 설명 등 많은 부분에서 내용이 겹친다.

판과 그 연장선상에서 논의된 ‘국학’에 대한 평가로 전개되었다. 이 모든 국면에서 공통되게 나타난 특징은 ‘근대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입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용희의 사상은 결코 근대주의로만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늘 ‘현대 속의 근대’를 살았는데, 이는 세계사의 ‘뒷바퀴-근대’를 붙잡으면서도 ‘앞바퀴-현대’를 내다봐야 하는 한국의 현실을 표현한 말이기도 했다. 이러한 복합성은 이용희의 학문이 그 시작에서부터 ‘근대’에 대한 ‘분노’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유지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식민지조선에서 태어난 이용희는 자신의 ‘삶’을 직시하지 못할 정도로 깊은 고독감에 시달려야 했는데, ‘지식’ — 특히 그 연장선상에 만난 ‘정치학’ — 은 그러한 현실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또 극복하게 해 주는 수단으로 채택된 것이었다. 이를 통해 그의 정치학은 ‘나-우리’의 삶을 취약하게 만든 원인을, 서구의 모방자 일본의 배후에 있는 ‘진짜 근대’를 향해 탐구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용희에게 근대는 추구되는 동시에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사용되었다. 탈근대의 맥락은 냉전 초기에는 ‘다민족주의 국가론’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근대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동원의 기제’를 근대의 모순인 ‘식민지’ 없이도 이룩한 강대국으로서 미소 양국의 성격을 규정한 논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이용희가 민주시절에 수용한 카의 논의를 ‘냉전형으로 전유’한 것이었음을 밝혔다.

근대전을 근거로 자결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지역주의로 나아간 카의 논의는 ‘근대비판’을 함축하면서도 그 현실적 대안을 계획경제에 의거한 ‘히틀러의 유럽 신질서’ 구상에 찾은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은 이용희의 ‘다민족주의 국가론’에 은밀하게 스며들어 ‘지상주의’의 함정 — 제국일본의 그림자 — 을 구성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이용희가 탈냉전기 지역통합 논의에서 ‘슈미트’의 연방론을 끌고 왔던 사실은 그의 탈근대 언설이 차지했던 지점에서 반드시 물어야 하는 문제를 암시한다.

요컨대 이용희의 다민족주의 국가론은 ‘식민지 없는 제국주의’와 어떠한 질적 차이를 지녔는지, 그가 슈미트를 불러내며 도출한 ‘탈근대적 권역’

이란 과연 ‘정치-주권’이 어떻게 ‘운영’되는 공간이었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본론에서 보았듯이 ‘문화적 동질성’으로 유지되는 ‘탈주권적 권역’이란 누군가가 정당한 법적 주체로 인정되는 공간도, 혹은 누군가가 결단을 내리는 진정한 주체로 나타나는 공간도 아니었다. 거기서 주권은 소재를 불문에 부친 채, 또한 충돌-결단을 동질성으로 방지하면서, 모두에게 ‘공유’되었기 때문에 ‘운영’의 방식이 문제가 되는 공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슈미트의 광역론은 ‘패권국’(Reich)의 존재를 허용하고 만다. 아무리 근대비판적인 그 논의도 히틀러 “총통의 업적이 독일의 라이히 사상에 정치적 현실”을 부여했다고 말해 버리는 순간 “존중”하며 “보장”하겠다고 맹세했던 역내 “모든 민족성”에 생존의 위기를 초래하고 만다.¹⁰⁵ 여기서의 문제는 역내 정치에 ‘현실적인 힘의 불균형’을 적용시켜 버린 권력의 운영방식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아래 구절은 이용희의 탈근대 언설이 ‘제국주의’와 얼마만큼의 거리를 유지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한국적’ 특성을 지녔는지 알려 주는 대목이라고 할 만하다.

국제정치학자로서 흥미로운 부분이 유럽공동체 회원국 사이의 ‘형평성’(equilibrium)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회원국 간에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대국들이 소국들을 마음대로 하게 되는 일종의 패권주의가 생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세력균형(balance of power)¹⁰⁶이 아주 중요한 문제로 부각됩니다. 여러 나라 사이에 세력균형이 있지 않으면 종국에는 패권주의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국제정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¹⁰⁶

¹⁰⁵ 슈미트의 광역론과 라이히 개념에 관해서는, Carl Schmitt, 岡田泉 訳, 「域外列強の干渉禁止を伴う国際法的広域秩序—国際法上のライヒ概念への寄与」, 『ナチスとシュミット』, 木鐸社, 1976, 118~132쪽. 이 글은 슈미트의 「*Völkerrechtliche Grossraumordnung mit Interventionsverbot für raumfremde Mächte: Ein Beitrag zum Reichsbegriff im ölkriegsrecht*」(1939)의 번역이다.

¹⁰⁶ 『전집』 제5권, 319쪽.

위의 구절에서 이용희는 국제정치학에서 흔하다 흔한 ‘세력균형’(balance of power) 관념을 거론하고 있지만, 이것이 『세계정치』의 마지막 강의에 제시된 논점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는 ‘유럽통합의 문제와 미래’를 논하면서 앞서 제시한 ‘주권의 공유’라는 ‘탈근대적’ 현상에 언급하는데, 바로 다음 문맥에 배치된 것이 위의 구절이었다.

‘탈근대적 권역’에서 구성국들 간의 ‘형평성’)은 역내 권력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용희가 간결하게 지적하고 있듯이 권력의 ‘균형’이 깨진 공간에는 반드시 ‘패권주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히틀러 치하에서 슈미트가—그리고 카 역시—저지른 사상적 죄과를 알고 있었던 이용희가 슈미트를 소환했던 지점에서 패권주의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의 정치학이 탈근대적 ‘제국’의 공간을 사유하면서도 끝까지 유지한 긴장감을 시사한다.

필자는 여기서 이 문제를 윤리적 시각에서만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여기서 이용희가 ‘세력균형’ 관념을 가져온 배경에 ‘근대한국의 역사적 경험’을 보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이용희의 국제정치학을 ‘한국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차지점이 지닌 함의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세력균형—균세, 혹은 정립(鼎立)—은 전통적 중화질서에서 근대적 국제질서로 이행한 전환기에 ‘약소국’으로서 삶을 시작해야 했던 한국의 역사적 경험이 담긴 ‘지역’ 관념이다.¹⁰⁷ 이용희는 탈냉전기에 슈미트를 불러내면서 ‘동아시아의 새로운 지역질서’를 상상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때 그의 상상이 독일의 광역질서론—그리고 제국일본의 대동아공영권—이 맑은 전철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력균형’ 관념이 베팀목이 되어줬기 때문이었다. 그것이 근대한국의 역사성에서 배태된 관념이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이용희의 국제정치학이 갖는 ‘한국적’ 특성을 보는 것도 결코 무리가 아닐 것이다. 그의 정치학을 ‘제왕의 학문’이라고 불러야 할 가치

¹⁰⁷ 근대한국에서 ‘세력균형’ 관념이 갖는 역사성에 대해서는, 장인성, 「근대한국의 세력균형 개념」, 『근대한국의 사회과학 개념 형성사』.

역시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것이다.¹⁰⁸

이러한 착지점이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분노’가 비판적인 ‘지식’을 통해 ‘근대’의 본질에 향한 결과였다고 한다면, 이용희의 정치학이 보여 준 결론은 한일근대사와 그 사상사적 가능성에 시사하는 바가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사카이는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의 이항구도에 지나치게 영향 받았던 전후 일본의 국제정치학에 대한 반성에서 ‘식민정책학’이 ‘지역주의’로 이어지는 맥락을 밝혔는데, 일본의 국제정치학이 갖는 학문적 계보를 ‘국제질서’와 ‘제국질서’라는 대비를 통해 분석한 그의 접근은 ‘근대’와 ‘탈근대’의 맥락을 동시에 지닌 이용희의 국제정치학을 이해하는 데도 시사점을 준다.¹⁰⁹ 근대사는 늘 식민사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제’와 ‘제국’의 양면성이 국제정치학적 지식을 구성한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사실일지도 모르겠다. 다만 역사적으로 이 국제가 아닌 제국의 공간에서 근대를 ‘비판’하고 그로부터 ‘탈’하고자 하는 사상 또한 영위되었다는 점이 이 문제를 필요이상으로 어렵게 만든다. 그렇지만 본고에서는 국제정치학이 ‘국제-근대’의 맥락에서만 논의되는 한계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입장에서 ‘제국-탈근대’의 맥락을 논의했다. 그 공과는 ‘다민족주의 국가론’과 ‘연방론’ 혹은 ‘카’와 ‘슈미트’가 연계되는 지점에서 이용희가 보여 준 착지점이 어떻게 ‘한국적’인 함의를 가졌는지 밝힌 상기 결론으로써 증명되었다고 믿는다.

108 하영선은 이용희에게 진학 문제를 의논할 적에 “국제정치학은 제왕의 학문인데, 애초에 취직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농담 같은 진담을 들었다고 한다. 그 말에 “전통적인 의미에서 왕이 해야 할 학문”이라는 경제적 의미가 담겨 있었다는 하영선의 해석도 늘 학문의 ‘실천성’을 중시한 이용희의 스타일에 비춰 볼 때 일리가 있지만, 한편으로 그에게 ‘제왕의 학문’이란 탈근대적 권역에서 ‘정치’를 운영하는 방식 또한 함의하지 않았을까 싶다. 다시 말해 거기에는 비단 전통적 의미만이 아니라 세계사의 ‘앞바퀴’를 내다본 이용희의 사상 또한 담겨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하영선, 『역사 속의 젊은 그들: 18세기 북학파에서 21세기 복합파까지』, 을유문화사, 2011, 261~262쪽.

109 酒井哲哉, 『近代日本の国際秩序論』, 2007(장인성 옮김, 『근대일본의 국제질서론』, 2010).